

Gyeonggido Elder Protection Agency

2020
경기도 내 노인보호전문기관
사업운영보고서 및 상담사례집

본 보고서 실적은 경기도 자체자료입니다.

노인학대 예방뿐 아니라 경기도민의 행복한 돌봄기본권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이화순 원장

먼저, 코로나19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경기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여러분께 감사인사를 전합니다.

경기도가 출연하여 만든 공공기관인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도내 31개 시군의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노인인권 증진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는 노인보호전문기관 4곳과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2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관은 노인학대의 일선에서 어르신과 대면하며 학대 상황에 신속하게 개입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경기도내 노인학대사태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2019년에는 914건의 노인학대가 발생하여 전국에서 가장 많은 학대 건수로 파악되었고, 2020년에는 더욱 증가하여 1,194건으로 기록되는 등에 따라 더욱 특별한 관심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학대받은 노인이 다시 일상생활을 회복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과 지역사회 복지기관이 서로 협력하여 어르신들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노력한다면, 앞으로 경기도 내 노인학대는 점차 줄어들고, 발전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운영보고서 및 상담사례집이 경기도의 노인학대를 이해하고, 노인 학대의 예방을 위한 초석으로 활용되길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노인학대 예방뿐 아니라 경기도민의 행복한 돌봄기본권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해받은 어르신을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의 노력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수원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 경기사회서비스원 이사장 **이은희 교수**

경기도내 노인보호전문기관 사업운영보고서 및 상담사례집의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은 2020년 4월 경기도사회서비스원으로 통합되면서 노인학대예방, 노인인권증진, 노인보호체계구축 등의 다양한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운영보고서는 경기도 전체의 노인학대 실태와 현황을 볼 수 있는 자료로써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한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노인학대 현황에 대한 분석과 학술적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봅니다.

현장에서 학대로 피해받은 어르신을 위해 노력하시는 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 종사자 여러분들의 노력에 감사드리면서 저도 사회서비스원 이사로서 더 나은 경기도, 더 좋은 사회복지 서비스,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노인인권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의 존엄과 인권이 지켜지는 경기도가 되길 희망합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장대석 의원

2020년 경기도 내 노인보호전문기관 사업 운영보고서 및 상담사례집 발행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사회가 고령화가 가속됨에 따라 노인학대 문제도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접수가 되지 않은 학대 사건이 더 있을 것으로 추측하면 노인학대는 더욱더 많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경기도는 노인학대 및 노인 인권 문제에 대해 대응하고 노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노인보호 및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립하였습니다.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해결하는 것은 경기도노인보호전문기관만의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경기도와 31개 시군,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경찰서 등등 많은 기관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통합적인 돌봄을 할 때 노인 문제는 개선되고 노인 학대는 줄어들 것입니다.

이번 사업보고서 발행을 시작으로 경기도에 노인학대 예방과 해결을 위한 네트워크가 촘촘히 구성되어 어르신의 존엄과 인권이 지켜지는 경기도가 되길 희망합니다.

끝으로 항상 사회복지 일선과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모든 사회복지종사자와 관계기관에서 일하시는 도민들께 감사드립니다.

CONTENTS

2020 경기도 내 노인보호전문기관 사업운영보고서 및 상담사례집

목 차

07	I.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역할
13	II. 일반현황
23	III. 경기도 노인학대 현황분석
55	IV. 2020년 특화사업
71	V. 상담사례집

표 목 차

25	[표1] 신고접수 건수 및 사례 비율
27	[표2] 월별 신고접수
30	[표3] 월별 학대사례 판정건수
32	[표4] 월별 일반사례 판정건수
34	[표5] 시군별 신고접수
36	[표6] 시군별 가정학대 판정건수
38	[표7] 시군별 시설학대 판정건수
39	[표8] 학대유형
40	[표9] 학대발생장소
43	[표10] 월별 학대사례 상담
45	[표11] 월별 일반사례 상담
46	[표12] 사례당 평균 상담
48	[표13] 신고자 유형
49	[표14] 신고접수 경로
50	[표15] 노인보호전문기관 인지경로
50	[표16] 노인학대예방교육 및 노인인권교육
51	[표17] 입소현황
52	[표18] 퇴소현황
53	[표19] 서비스 내용

제 1 장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역할



노인보호전문기관이 하는 일

01 신고상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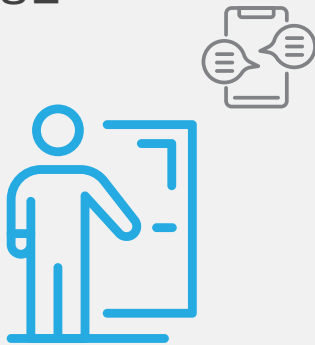
1577-1359 전화 (24시간 상담)

02 접수



현재 상황 파악, 피해노인 안전확보

03 현장방문



학대 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 상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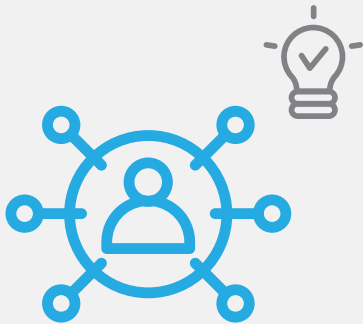
04 사례판정



학대 여부 판정, 개입방향 결정



05 서비스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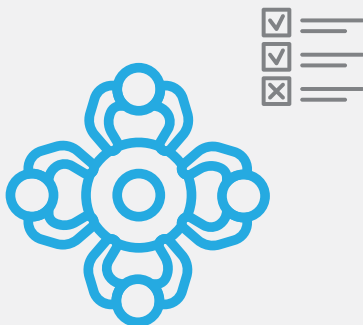
피해노인 특성에 따른 서비스 계획

06 서비스 제공



공식적 · 비공식적 자원 연계

07 서비스 종결



사례 개입 지속여부 판단 및 종결

08 사후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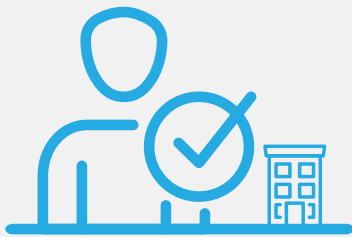
종결 이후 일정기간 정기적으로
관리하여 노인 학대 재발 방지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가 하는 일

Gyeonggido Public Agency for Social Service



01 인테이크 및 입소



피해노인, 보호자 대상 설명 후 입소

02 건강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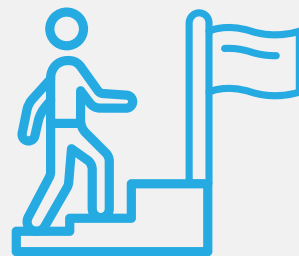
피해노인 건강검진 및 상태확인

03 서비스제공(프로그램)



건강관리, 심리치유, 사회적응사업 등

04 퇴소



상황종결 또는 거주지 확보 시 퇴소

여 백

일반현황

1. 운영법인 소개

- 운영법인 (재)경기도사회서비스원
- 대표자 이화순
- 설립일 2020년 1월 29일
- 소재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 경기도인재개발원 건강증진센터
- 연락처 (전화) 031)267-9389 (팩스)070-8280-0090
- 홈페이지 <http://gg.pass.or.kr>

• 비전과 목표



2.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소개

- **설립근거** - 노인복지법 제39조의5(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9(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설치)
- **위탁일** 2020. 4. 1
- **기관정보**

기관명	소재지	대표자	운영일	전화번호	팩스번호	홈페이지
경기도 노인보호전문기관	수원시	오행남	19. 02. 25	031-268-1389	031-601-9331	gepa.co.kr
경기동부 노인보호전문기관	성남시	이재홍	04. 11. 10	031-736-1389	031-735-3795	kg1389.or.kr
경기북부 노인보호전문기관	의정부시	김지순	06. 03. 01	031-821-1461	031-821-2246	gnnoin.kr
경기서부 노인보호전문기관	부천시	이현주	10. 09. 30	032-683-1389	032-683-1388	ggw1389.or.kr
경기북부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의정부시	김지순	11. 01. 10	-	-	-
경기서부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부천시	이현주	11. 04. 05	-	-	-

3. 미션 및 비전

미션 | 어르신들의 존엄과 인권이 지켜지는 경기도

비전 | 우리는 어르신들의 권익향상에 앞장서며, 노인학대 예방의 중심기관

핵심가치

권익옹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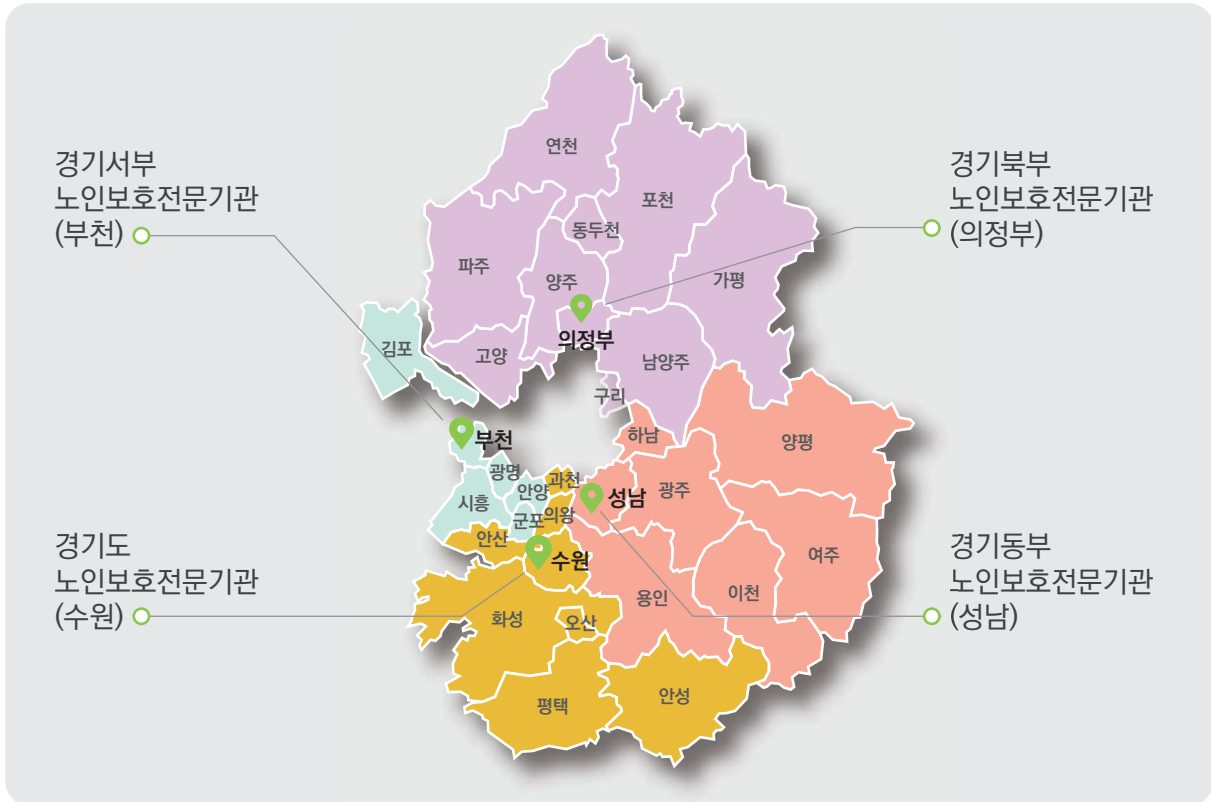
전문성

실천

연대

- 경기도 어르신들의 노인인권을 향상한다
- 경기도 어르신들의 권리옹호자로 어르신이 존엄하고, 행복한 경기도를 만든다
- 경기도에서 신뢰받는 전문가로 노인학대 예방과 노인인권 증진을 위해 앞장선다

4. 관할구역 지도



5. 연혁

- 2004.11 경기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개소(現 경기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 2006.01 경기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개소
- 2010.09 경기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개소
- 2011.01 경기북부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개소
- 2011.04 경기서부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개소
- 2018.12 경기도노인보호전문기관 경기복지재단 수탁운영
- 2019.07 경기복지재단 수탁운영
-노인보호전문기관(남부,북부,서부),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북부,서부)
- 2019.12 경기도 공공센터협의회 구성
- 2020.04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이관으로 운영주체 변경
-노인보호전문기관(경기도,남부,북부,서부)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북부,서부)
- 2020.05 경기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기관명 변경 「경기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 2020.10 노인보호전문기관 기능강화사업 수탁

6. 직원현황(*2020년 12월 기준)

• 인력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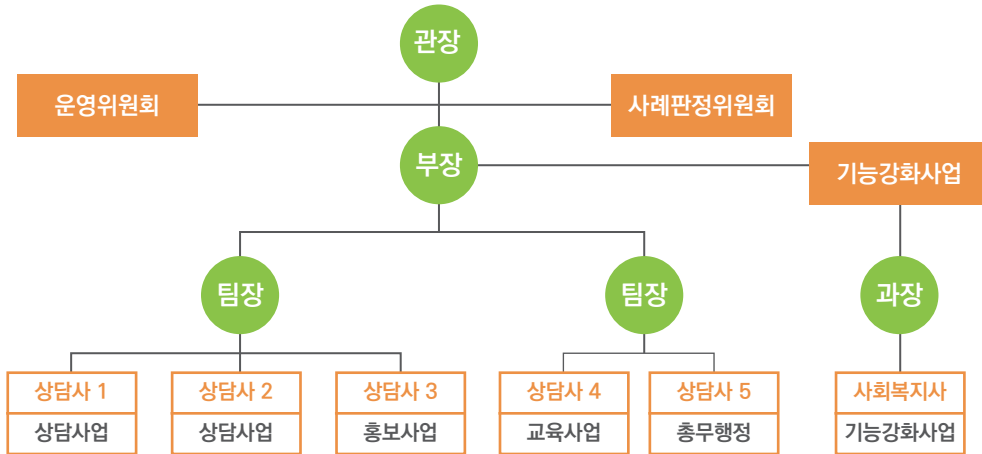
구분	노인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노인전용센터
	가형	나형	
인력정원	10명	9명	6명
해당시설	경기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경기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경기도노인보호전문기관 경기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경기북부학대피해노인전용센터 경기서부학대피해노인전용센터

• 직원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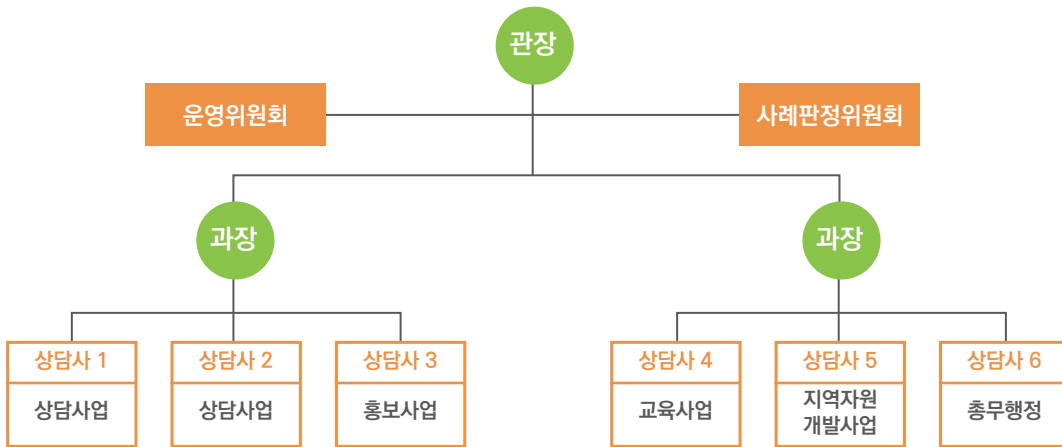
기관명	계	관장	부장	과장	팀장/ 주임	상담원	사회 복지사	요양 보호사	기타
경기도노인보호전문기관	11	1	1	-	2	5	-	-	2 (기능강화 사업)
경기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10	1	-	2	2	5	-	-	-
경기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10	1	-	2	2	5	-	-	-
경기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9	1	-	2	3	3	-	-	-
경기북부학대피해노인전용센터	4	-	-	-	-	-	1	3	-
경기서부학대피해노인전용센터	4	-	-	-	-	-	1	3	-

7. 조직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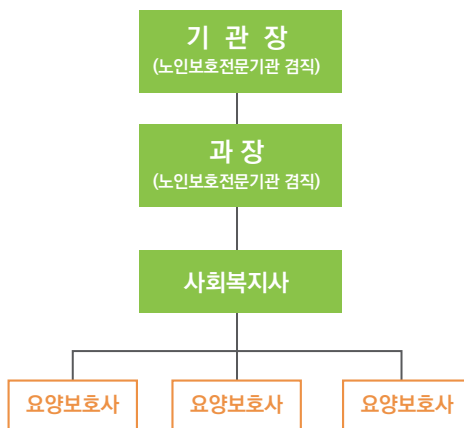
• 경기도노인보호전문기관



• 경기동부·경기북부·경기서부 노인보호전문기관



○ 경기북부·경기서부 학대피해노인전용센터



8. 노인보호전문기관 주요사업

• 사업의 의의

노인학대 및 노인인권 문제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처로 노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노인보호 및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사회인식을 개선한다.

• 사업의 목적

- 1) 노인학대 사회적 안전망 구축으로 노인보호 기능 강화
- 2)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식개선 등을 통한 노인의 삶의 질 향상 도모

• 주요사업

1) 상담사업

노인학대 신고전화의 운영 및 사례접수를 통한 노인학대 의심사례에 대한 현장조사 및 상담을 수행하여 피해노인의 안전확보 및 차별 해소 등 인권 확립을 위해 원조하고, 가정 내 역할 회복 및 사회 재적응을 유도

- 노인학대 24시간 상담전화 '1577-1389'설치 운영
- 노인학대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 실시
- 사례관리 및 사례판정위원회 운영
- 학대피해노인 일시보호 제공

2) 예방교육사업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교육을 실시하여 긍정적 노인인식 고취, 지역사회 잠재된 노인학대 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고 은폐된 노인학대 사례를 발굴하며, 노인차별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 및 노인학대 사례 발생시 대처능력을 향상

- 예방교육 실시 : 노인 및 일반인, 신고의무자, 관련기관 종사자 등
- 노인학대 예방교육 콘텐츠 개발

3) 홍보사업

노인학대 실태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역할 및 노인학대 상담전화를 홍보하여 기관의 접근성을 높임으로 학대피해노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인학대를 예방

- 대중매체 및 인터넷 홍보
- 노인학대 예방 캠페인 및 사진전, 기관방문 홍보 활동 등
- 홍보물 제작 및 배포

4) 지역사회 연계사업

지역사회 내 노인학대 사업과 관련한 인적, 물적 자원을 개발하고 연계하여 자원들을 적재적소 활용함으로써 노인학대사업의 전문성을 높이고 노인학대 사례해결을 위한 자원연계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함

- 사업운영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 운영위원회 운영
- 운영보고서 발간 및 조사연구
- 전문상담원의 전문성 향상 및 자기개발을 위한 교육

9.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주요사업

• 사업의 의의

학대피해노인을 일정기간 보호하며 심신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학대행위자 및 가족들에 대한 전문상담을 제공하여 재학대 예방 및 원가정 회복을 지원한다.

• 주요사업 내용

- 건강관리지원사업 : 활력징후체크, 병원진료, 건강검진, 목욕, 물리치료 등
- 일상생활지원사업 : 건강식 제공, 티타임, 간식, 이·미용 서비스
- 심리치유사업 : 음악/원예/웃음치료, 요가, 도예, 레크레이션, 자체프로그램 등
- 사회적응사업 : 문화지원, 생신잔치, 어버이날, 명절행사, 송년모임 등

• 입소대상

- 만 65세 이상의 학대피해노인으로 쉼터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보호기간

- 4개월 이내(단, 학대재발 등으로 재입소가 필요한 경우 연간 6개월 이내)

여 백

제III장

경기도내 노인학대 현황분석



경기도내 노인학대 현황분석 (2018~2020)

1. 노인학대 신고접수

가. 전체 신고접수

경기도의 4개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신속한 학대사례 개입을 위하여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보호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노인인권증진 및 노인학대 예방에 기여하고 있다.

연중 24시간 노인학대 신고상담전화 1577-1389, 노인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 및 이메일 등을 통한 온라인 접수와 직접 내방, 가정방문, 이동상담 등을 통한 대면접수 및 서신에 의한 접수, 정부민원 안내 콜센터, 보건복지콜센터, 112, 119 신고 등을 통하여 신고접수를 받고 있다.

신고 접수된 사례는 노인학대 여부, 응급성 정도, 현재 학대피해노인의 안전 및 학대 지속성 여부 등의 기초정보를 수집하여 노인학대의심사례와 일반사례를 판정한다.

- 노인학대 의심사례

신고접수 당시 노인학대가 의심되는 사례로 응급(12시간), 비응급 및 잠재적 사례(72시간)로 일정 시간 이내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노인의 안전 및 응급성 여부와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신변보장과 안전조치 등을 확인하고 학대의심사례로서의 적합한 판정에 필요한 충분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

- 일반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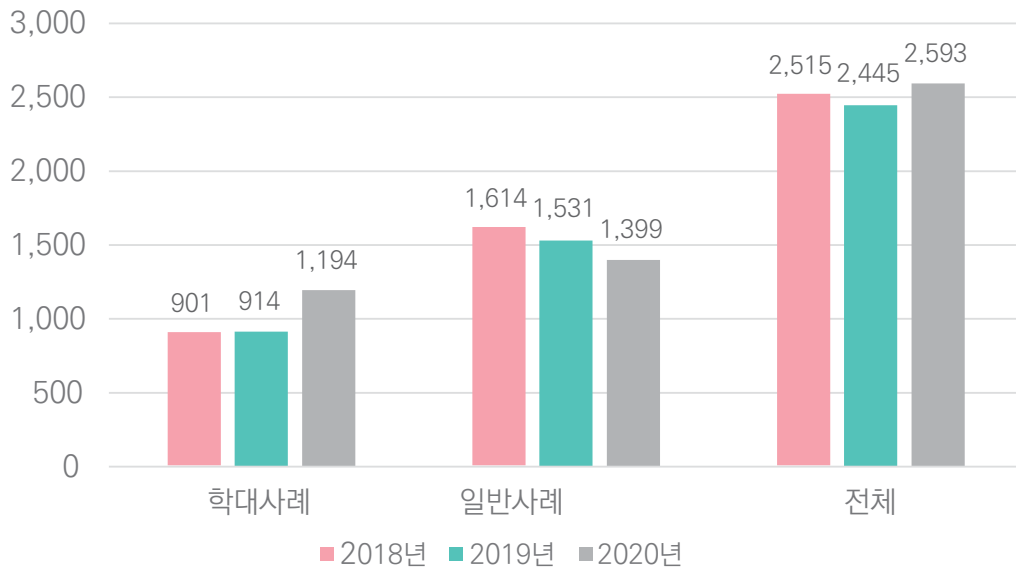
신고 접수된 사례 중 학대의심사례로 보기 어려운 사례로 노인학대와 관련 없이 단순 시설입소, 기관안내 등의 문의와 자녀 간 재산 갈등의 법적 분쟁 등으로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 및 노인학대로 신고 되었지만 정보부족(인적사항에 대한 정보부족, 주소 불명확)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

이처럼 신고 당시 수집한 기초정보와 현장조사를 통하여 수집된 정보를 중심으로 각 기관은 자체사례회의 및 사례판정위원회 등을 거쳐 학대사례(응급, 비응급, 잠재적), 일반사례로 분류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학대사례에 포함되는 응급, 비응급, 잠재적 사례와 일반사례 접수 건수의 총계를 전체 신고접수 건수로 보았다.

1) 신고접수 건수 및 사례 비율

[표1]에서 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신고접수건수 2,515건, 2,445건, 2,593건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 하지만 학대판정된 사례건수와 신고접수 대비 학대판정비율은 매년 증가하였다. 학대판정건수를 보면 2018년부터 901건, 914건, 1,194건으로 나타났고, 신고접수 대비 학대판정비율은 35.8%, 37.4%, 46.0%로 나타났다.



[도표1 - 신고접수 건수 및 사례 비율]

구분	2018		2019		2020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학대사례	901	35.8	914	37.4	1,194	46.0
일반사례	1,614	64.2	1,531	62.6	1,399	54.0
전체	2,515	100	2,445	100	2,593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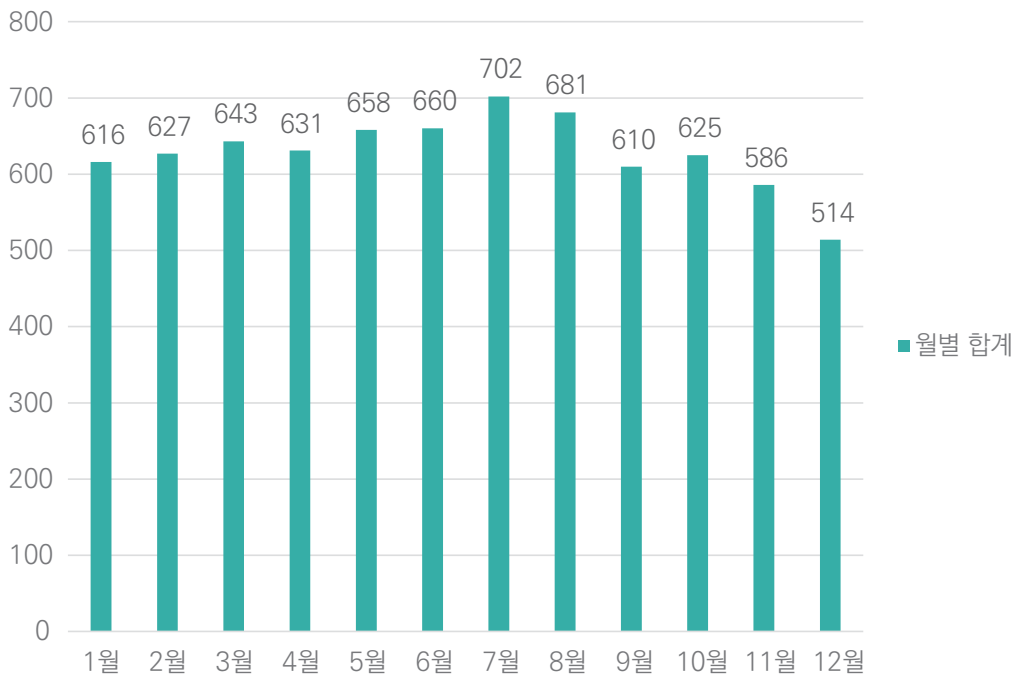
[표1 - 신고접수 건수 및 사례 비율]

2) 월별 신고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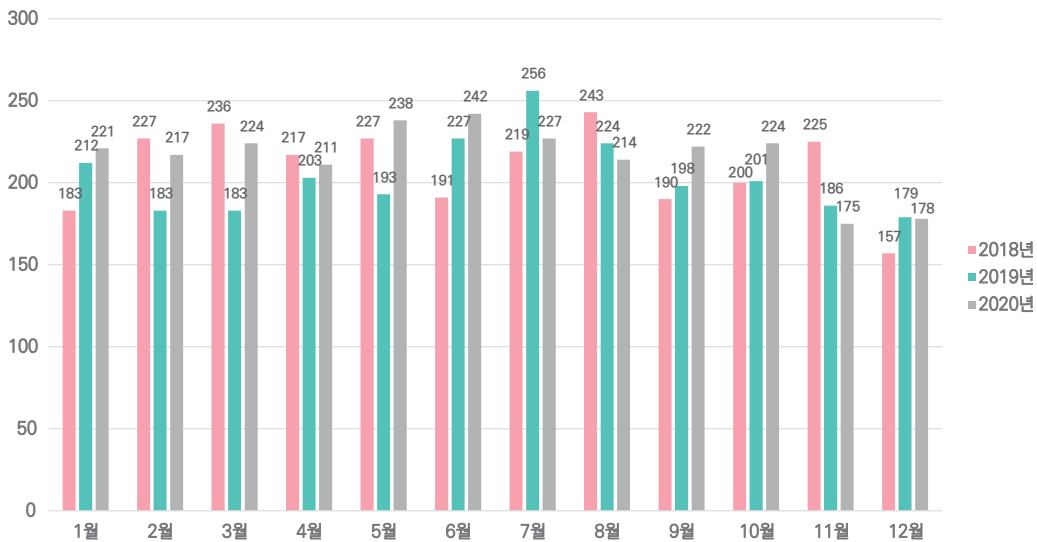
[표2]에서 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노인학대 신고접수는 평균 2,518건이며 2018년부터 2,515건, 2,445건, 2,593건으로 점차 증가하였다. 신고접수가 가장 많았던 달은 7월로 702건, 가장 적은 달은 12월로 514건이었다.

연차별로 신고접수건수를 비교해보면 2018년에는 8월이 243건으로 가장 많았고 12월이 157건으로 가장 적었다. 2019년에는 7월이 256건으로 가장 많았고 12월이 179건으로 가장 적었다. 2020년에는 6월이 242건으로 가장 많았고 12월이 178건으로 가장 적었다. 대체로 6~8월에 신고접수가 집중된 경향이 있었고, 12월은 접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별 평균 신고접수건수는 2018년이 210건, 2019년이 204건, 2020년이 216건으로 3년 동안 월 평균 210건의 노인학대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도표2 - 월별 신고접수 / 2018년- 2020년]



[도표2 - 월별 신고접수]

구분	월별 신고접수							
	2018		2019		2020		합계	
계	2,515	(100)	2,445	(100)	2,593	(100)	7,553	(100)
1월	183	(7.3)	212	(8.7)	221	(8.5)	616	(8.2)
2월	227	(9.0)	183	(7.5)	217	(8.4)	627	(8.3)
3월	236	(9.4)	183	(7.5)	224	(8.6)	643	(8.5)
4월	217	(8.6)	203	(8.3)	211	(8.1)	631	(8.4)
5월	227	(9.0)	193	(7.9)	238	(9.2)	658	(8.7)
6월	191	(7.6)	227	(9.3)	242	(9.3)	660	(8.7)
7월	219	(8.7)	256	(10.5)	227	(8.8)	702	(9.3)
8월	243	(9.7)	224	(9.2)	214	(8.3)	681	(9.0)
9월	190	(7.6)	198	(8.1)	222	(8.6)	610	(8.1)
10월	200	(8.0)	201	(8.2)	224	(8.6)	625	(8.3)
11월	225	(8.9)	186	(7.6)	175	(6.7)	586	(7.8)
12월	157	(6.2)	179	(7.3)	178	(6.9)	514	(6.8)
평균	210		204		216		210	

[표2 - 월별 신고접수]

나. 월별 사례판정

현장조사 실시 후에는 신고접수 당시 파악된 정보와 현장조사를 통하여 수집된 정보를 중심으로 학대여부를 판정하는데 이를 사례판정이라고 한다. 사례판정은 상황의 위급성 정도, 학대피해노인의 상황, 가족 또는 학대행위자 상황 등 학대의 심각성 및 응급성 여부에 따라 응급사례, 비응급사례, 잠재적 사례, 일반사례로 분류된다. 사례판정 시에는 충분한 자료를 통하여 사례를 판정하되, 판정하기 어려운 사례의 경우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거나 사례판정위원회를 통하여 사례를 판정해 사례판정의 객관성을 확보한다.

응급 사례는 노인학대가 현재 발생하고 있거나, 학대로 인해 즉각적인 의료조치가 필요한 경우이다. 또한 학대행위자로부터 즉시 격리가 요구되며, 노인의 생명 혹은 안전이 매우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해당된다. 그 밖의 유기 및 장기간 방임으로 인하여 노인의 영양상태 불량 등으로 생명이 위급한 경우, 학대행위자로부터 신체적 학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의심되며 노인의 상처가 심각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응급 사례의 조치방법으로는 12시간 이내에 현장조사를 실시하며 노인의 안전을 위한 응급조치를 우선으로 제공해야 할 경우 가능한 112 또는 119를 통해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학대피해노인을 학대 행위자로부터 격리시켜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대피해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피해노인이 격리여부를 판단할 지적·심리적 능력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구한 다음 처리한다. 응급상태가 해결되면 비응급사례 조치방법에 준하여 학대피해노인, 학대행위자 및 가족에게 서비스를 지원한다.

비응급 사례는 노인학대가 발생하였으나 학대피해노인의 안전이 확보되어 응급이 아닌 경우와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가 경미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조치방법으로는 노인학대와 관련된 정보를 최대한 수집하며 정확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수립한 서비스 계획에 의하여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여 향후에는 노인학대 원인이 개선되었는지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잠재적 사례는 학대가 발생하고 있지 않으나 노인부양, 노인과 가족 간의 의사소통기술 부족이나 갈등 등 학대위험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된다. 조치 방법으로 학대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학대 위험요인이 드러난 관계, 노인학대 유형, 학대발생 원인 등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파악한다. 아울러 이에 따른 정확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사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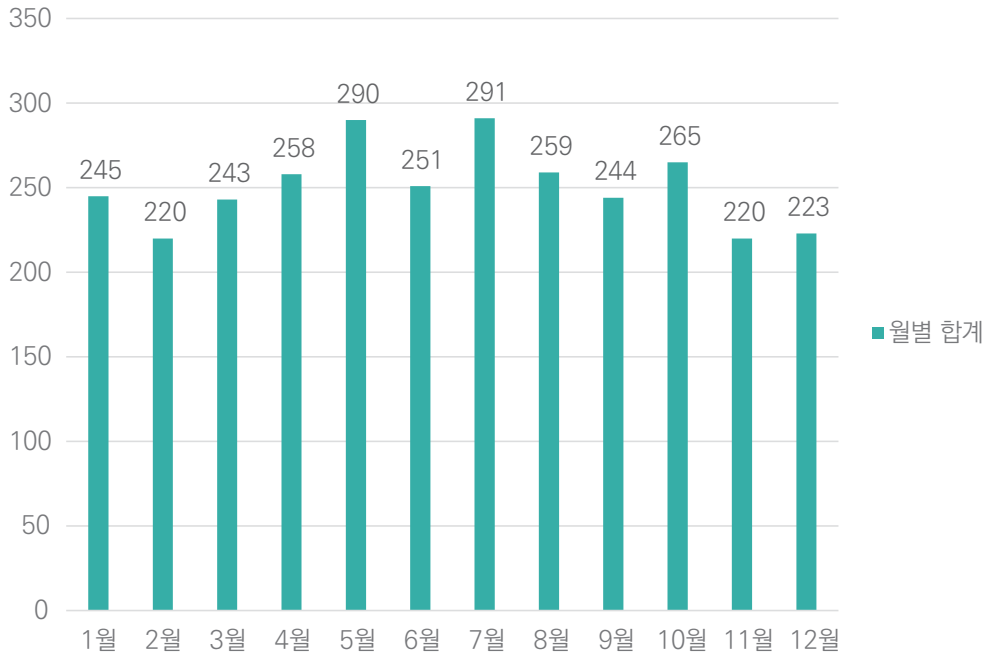
일반사례는 신고접수시 노인학대가 의심되었으나, 사실관계 확인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노인학대 및 학대위험요인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이다. 또한 신고자 및 학대피해노인의 연락두절로 개입이 불가능한 경우, 학대피해노인 및 기타 인적사항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에 일반사례로 판정한다.

1) 신고접수 건수 및 사례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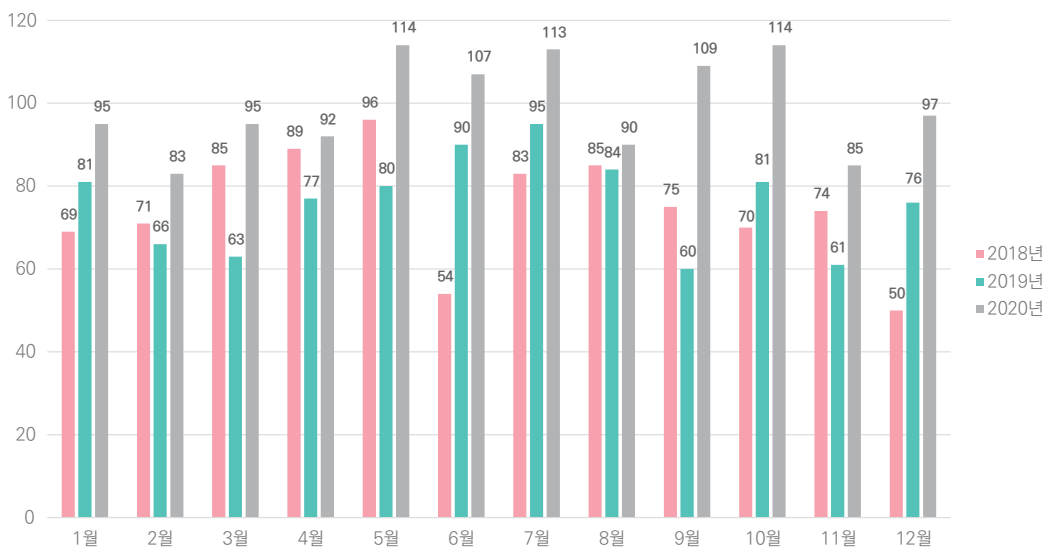
[표3]에서 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노인학대로 판정된 사례건수는 901건, 914건, 1,194건으로 점차 증가하였다. 학대사례건수가 가장 많았던 달은 5월과 7월로 각각 290건, 291건이었으며 가장 적은 달은 12월로 223건이었다.

연차별로 학대사례건수를 비교해보면 2018년에는 5월이 96건으로 가장 많았고 12월이 50건으로 가장 적었다. 2019년에는 7월이 95건으로 가장 많았고 9월이 60건으로 가장 적었다. 2020년은 5월과 10월이 각각 114건으로 가장 많았고 2월이 83건으로 가장 적었다.

월별 평균 학대사례건수는 2018년이 75건, 2019년이 76건, 2020년이 100건으로 3년 동안 월 평균 84건의 노인학대 신고가 접수되었고 2018~2019년 대비 2020년에 학대판정건수가 매우 크게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도표3 - 월별 학대사례 판정건수 / 2018년- 2020년]



[도표3 - 월별 학대사례 판정건수]

구분	월별 학대사례 판정건수							
	2018		2019		2020		합계	
계	901	(100)	914	(100)	1,194	(100)	3,009	(100)
1월	69	(7.7)	81	(8.9)	95	(8.0)	245	(8.1)
2월	71	(7.9)	66	(7.2)	83	(7.0)	220	(7.3)
3월	85	(9.4)	63	(6.9)	95	(8.0)	243	(8.1)
4월	89	(9.9)	77	(8.4)	92	(7.7)	258	(8.6)
5월	96	(10.7)	80	(8.8)	114	(9.5)	290	(9.6)
6월	54	(6.0)	90	(9.8)	107	(9.0)	251	(8.3)
7월	83	(9.2)	95	(10.4)	113	(9.5)	291	(9.7)
8월	85	(9.4)	84	(9.2)	90	(7.5)	259	(8.6)
9월	75	(8.3)	60	(6.6)	109	(9.1)	244	(8.1)
10월	70	(7.8)	81	(8.9)	114	(9.5)	265	(8.8)
11월	74	(8.2)	61	(6.7)	85	(7.1)	220	(7.3)
12월	50	(5.5)	76	(8.3)	97	(8.1)	223	(7.4)
평균	75		76		100		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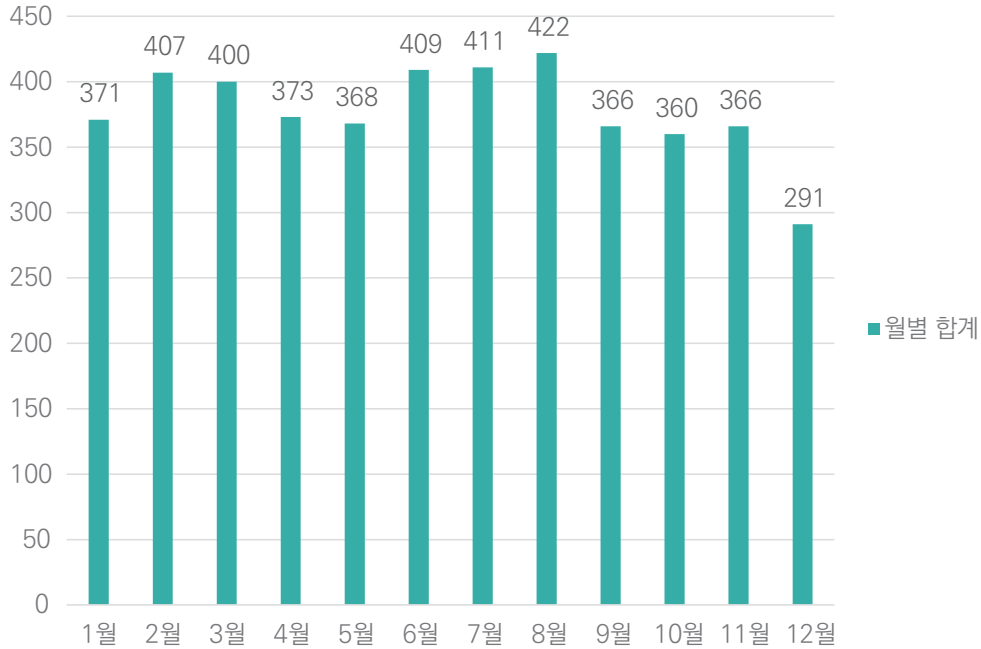
[표3 - 월별 학대사례 판정건수]

2) 월별 일반사례 판정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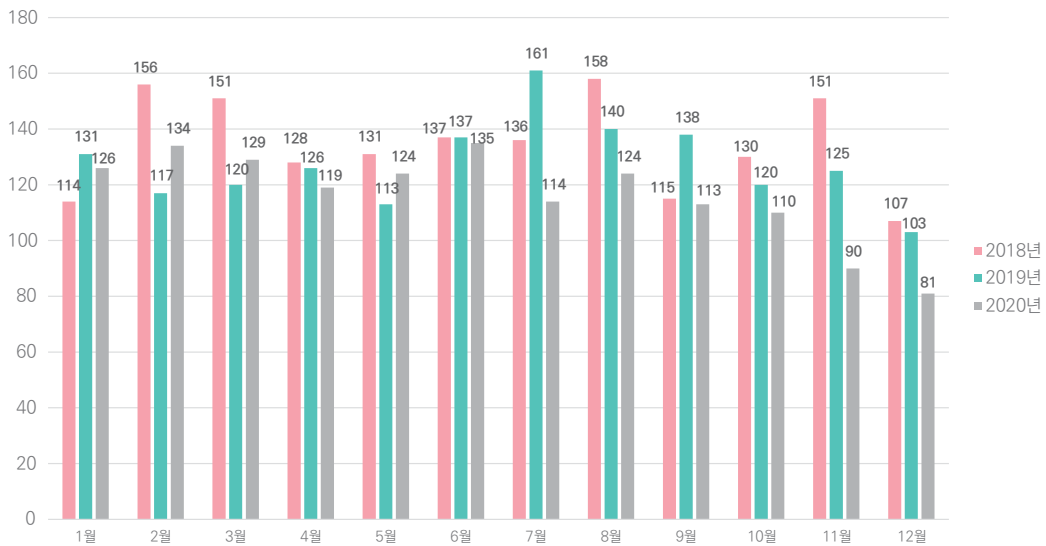
[표4]에서 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노인학대가 아닌 일반사례로 판정된 건수는 1,614건, 1,531건, 1,399건으로 점차 감소하였다. 일반사례건수가 가장 많았던 달은 7월과 8월로 각각 422건, 411건이었으며 가장 적은 달은 12월로 291건이었다.

연차별로 일반사례건수를 비교해보면 2018년에는 8월이 158건으로 가장 많았고 12월이 107건으로 가장 적었다. 2019년에는 7월이 161건으로 가장 많았고 12월이 103건으로 가장 적었다. 2020년에는 6월과 2월이 각각 135건, 134건으로 가장 많았고 12월이 81건으로 가장 적었다. 월별 평균 일반사례건수는 2018년이 135건, 2019년이 128건, 2020년이 117건으로 3년 동안 월 평균 126건의 일반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2]부터 [표4]까지 내용을 정리해보면 신고접수와 학대사례는 매년 증가한 반면 일반사례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황 중 특이점은 신고접수가 2019년 대비 2020년에 148건이 증가하는데, 학대사례는 280건이 증가하여 약 2배 차이가 났다. 반면 일반사례는 132건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표4 - 월별 일반사례 판정건수 / 2018년- 2020년]



[도표4 - 월별 일반사례 판정건수]

구분	월별 일반사례 판정건수							
	2018		2019		2020		합계	
계	1,614	(100)	1,531	(100)	1,399	(100)	4,544	(100)
1월	114	(7.1)	131	(8.6)	126	(9.0)	371	(8.2)
2월	156	(9.7)	117	(7.6)	134	(9.6)	407	(9.0)
3월	151	(9.4)	120	(7.8)	129	(9.2)	400	(8.8)
4월	128	(7.9)	126	(8.2)	119	(8.5)	373	(8.2)
5월	131	(8.1)	113	(7.4)	124	(8.9)	368	(8.1)
6월	137	(8.5)	137	(8.9)	135	(9.6)	409	(9.0)
7월	136	(8.4)	161	(10.5)	114	(8.1)	411	(9.0)
8월	158	(9.8)	140	(9.1)	124	(8.9)	422	(9.3)
9월	115	(7.1)	138	(9.0)	113	(8.1)	366	(8.1)
10월	130	(8.1)	120	(7.8)	110	(7.9)	360	(7.9)
11월	151	(9.4)	125	(8.2)	90	(6.4)	366	(8.1)
12월	107	(6.6)	103	(6.7)	81	(5.8)	291	(6.4)
평균	135		128		117		126	

[표4 - 월별 일반사례 판정건수]

다. 시군별 신고접수 및 사례판정

1) 신고접수 건수 및 사례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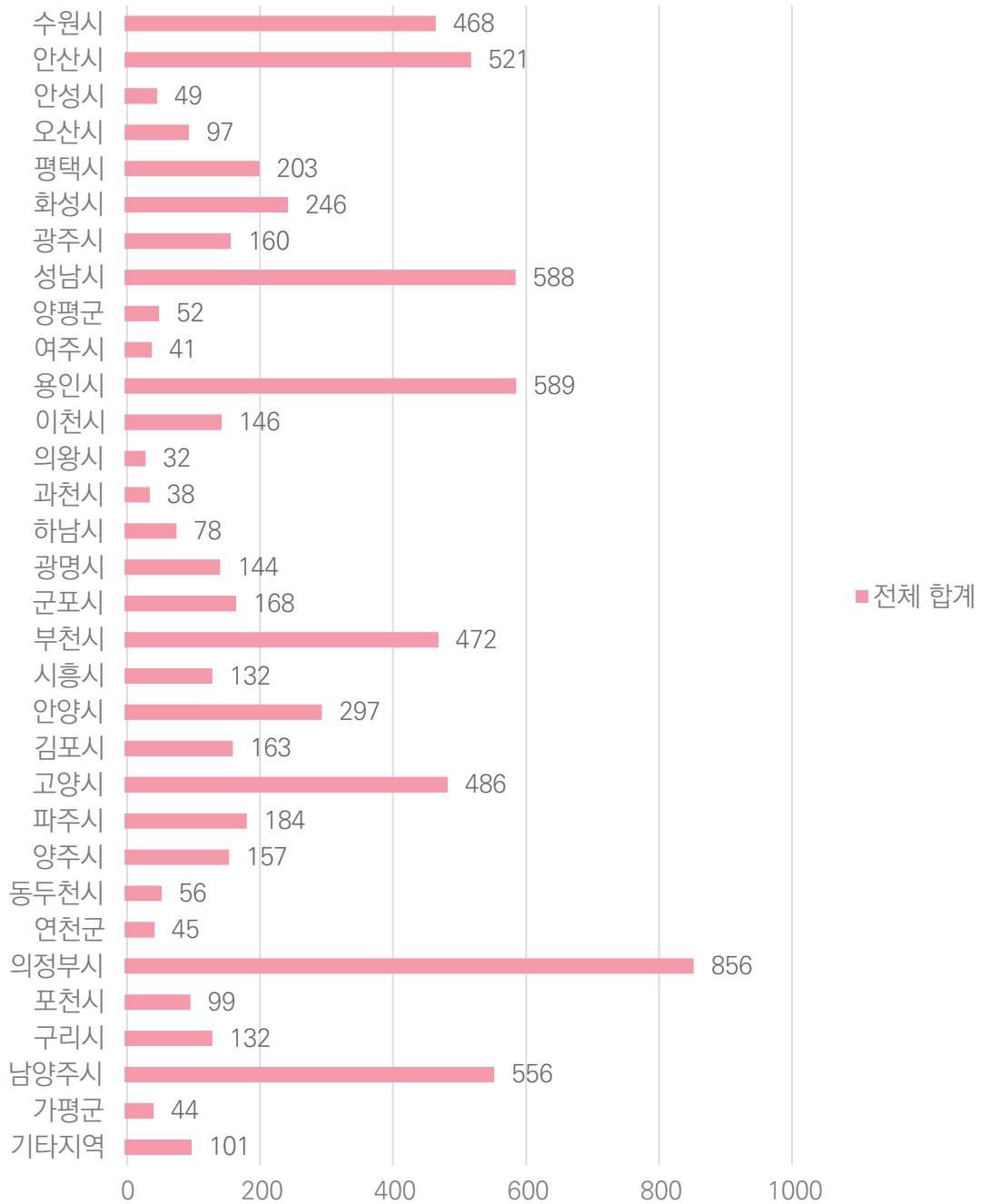
[표5]에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신고접수를 보면 의정부시가 856건, 용인시가 589건, 성남시가 58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의왕시가 32건으로 가장 적었다.

연차별로 신고접수건수를 비교해보면 2018년에는 의정부시가 25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의왕시가 13건으로 가장 적었다. 2019년에도 의정부시가 276건으로 가장 많았고 여주시가 7건으로 가장 적었다. 2020년도 의정부시가 32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의왕시가 7건으로 가장 적었다.

시군별 평균 신고접수건수는 2018년 81건, 2019년 77건, 2020년 81건으로 3년 동안 평균 80건의 신고접수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이사항으로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소속되어 있는 시군에서 신고접수건수가 높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¹⁾

1) 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지역: 수원, 성남, 의정부, 부천



[도표5 - 시군별 신고접수 / 2018년~2020년]

구분	시군별 신고접수							
	2018		2019		2020		합계	
계	2,515	(100)	2,384	(100)	2,501	(100)	7,400	(100)
수원시	176	(7.0)	128	(5.4)	164	(6.6)	468	(6.3)
안산시	198	(7.9)	147	(6.2)	176	(7.0)	521	(7.0)
안성시	20	(0.8)	15	(0.6)	14	(0.6)	49	(0.7)
오산시	23	(0.9)	41	(1.7)	33	(1.3)	97	(1.3)
평택시	68	(2.7)	63	(2.6)	72	(2.9)	203	(2.7)
화성시	90	(3.6)	50	(2.1)	106	(4.2)	246	(3.3)
광주시	51	(2.0)	60	(2.5)	49	(2.0)	160	(2.2)
성남시	147	(5.8)	229	(9.6)	212	(8.5)	588	(7.9)
양평군	14	(0.6)	19	(0.8)	19	(0.8)	52	(0.7)
여주시	16	(0.6)	7	(0.3)	18	(0.7)	41	(0.6)
용인시	166	(6.6)	215	(9.0)	208	(8.3)	589	(8.0)
이천시	51	(2.0)	53	(2.2)	42	(1.7)	146	(2.0)
의왕시	13	(0.5)	12	(0.5)	7	(0.3)	32	(0.4)
과천시	14	(0.6)	10	(0.4)	14	(0.6)	38	(0.5)
하남시	32	(1.3)	20	(0.8)	26	(1.0)	78	(1.1)
광명시	42	(1.7)	49	(2.1)	53	(2.1)	144	(1.9)
군포시	67	(2.7)	59	(2.5)	42	(1.7)	168	(2.3)
부천시	140	(5.6)	169	(7.1)	163	(6.5)	472	(6.4)
시흥시	41	(1.6)	39	(1.6)	52	(2.1)	132	(1.8)
안양시	128	(5.1)	116	(4.9)	53	(2.1)	297	(4.0)
김포시	66	(2.6)	50	(2.1)	47	(1.9)	163	(2.2)
고양시	148	(5.9)	153	(6.4)	185	(7.4)	486	(6.6)
파주시	50	(2.0)	71	(3.0)	63	(2.5)	184	(2.5)
양주시	53	(2.1)	34	(1.4)	70	(2.8)	157	(2.1)
동두천시	28	(1.1)	18	(0.8)	10	(0.4)	56	(0.8)
연천군	19	(0.8)	13	(0.5)	13	(0.5)	45	(0.6)
의정부시	258	(10.3)	276	(11.6)	322	(12.9)	856	(11.6)
포천시	39	(1.6)	33	(1.4)	27	(1.1)	99	(1.3)
구리시	46	(1.8)	36	(1.5)	50	(2.0)	132	(1.8)
남양주시	193	(7.7)	185	(7.8)	178	(7.1)	556	(7.5)
가평군	17	(0.7)	14	(0.6)	13	(0.5)	44	(0.6)
기타지역	101	(4.0)	0	(0.0)	0	(0.0)	101	(1.4)
평균	81		77		81		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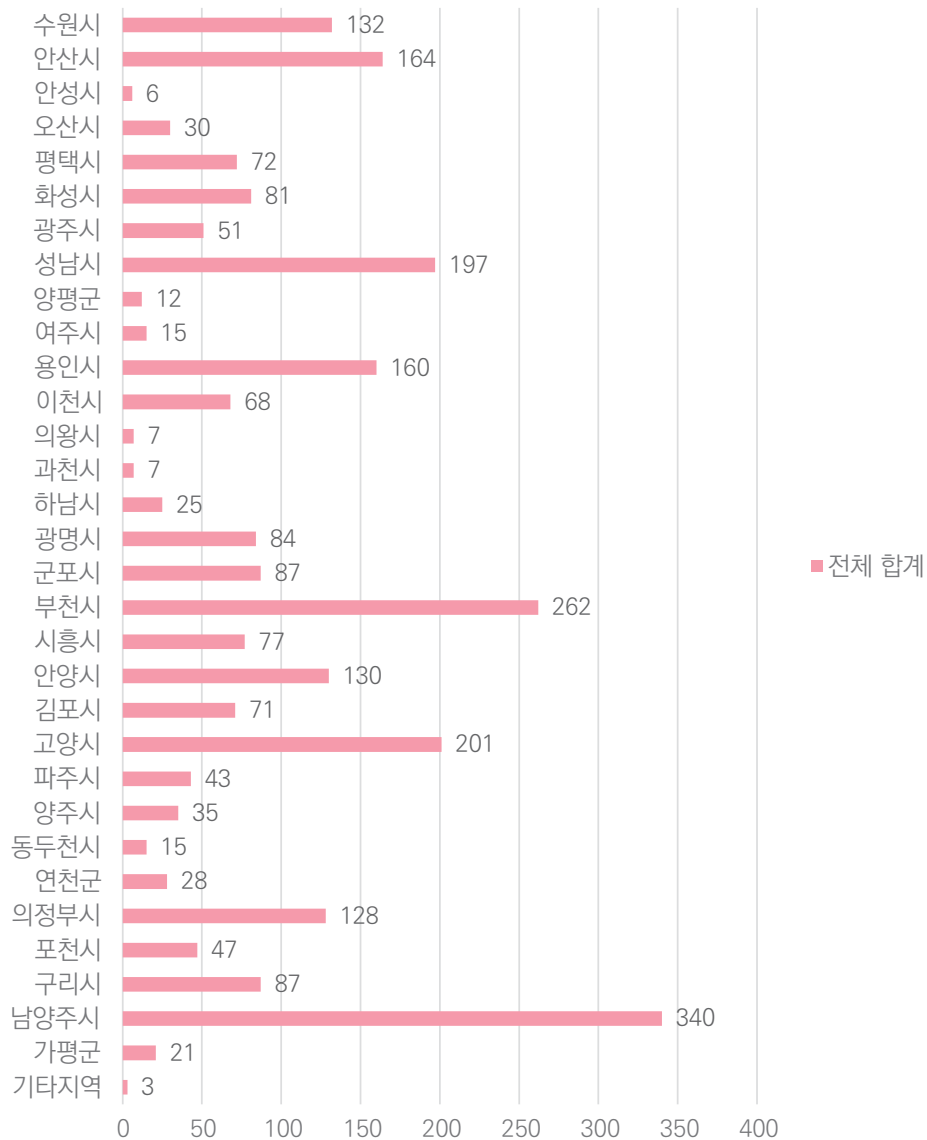
[표5 - 시군별 신고접수]

2) 시군별 학대사례 중 가정학대 판정건수

[표6]에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시군별 학대사례 중 가정학대 판정건수를 보면 남양주시와 부천시 각각 340건, 262건으로 가장 많았고, 안성시는 6건으로 가장 적었다.

연차별로 비교해보면 2018년에는 남양주시가 127건으로 가장 많았고 안성시, 양평군, 의왕시, 과천시 각각 2건으로 가장 적었다. 2019년에는 부천시가 95건으로 가장 많았고 과천시가 1건으로 가장 적었다. 2020년에는 남양주시가 123건으로 가장 많았고 안성시가 1건으로 가장 적었다.

시군별 평균 가정학대 판정건수는 2018년 27건, 2019년 27건, 2020년 33건으로 3년 동안 평균 33건의 가정학대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표6 - 시군별 가정학대 판정건수 / 2018년~2020년]

구분	시군별 가정학대 판정건수							
	2018		2019		2020		합계	
계	824	(100)	825	(100)	1,037	(100)	2,686	(100)
수원시	36	(4.4)	35	(4.2)	61	(5.9)	132	(4.9)
안산시	67	(8.1)	38	(4.6)	59	(5.7)	164	(6.1)
안성시	2	(0.2)	3	(0.4)	1	(0.1)	6	(0.2)
오산시	5	(0.6)	12	(1.5)	13	(1.3)	30	(1.1)
평택시	35	(4.2)	13	(1.6)	24	(2.3)	72	(2.7)
화성시	37	(4.5)	10	(1.2)	34	(3.3)	81	(3.0)
광주시	12	(1.5)	31	(3.8)	8	(0.8)	51	(1.9)
성남시	36	(4.4)	69	(8.4)	92	(8.9)	197	(7.3)
양평군	2	(0.2)	4	(0.5)	6	(0.6)	12	(0.4)
여주시	5	(0.6)	2	(0.2)	8	(0.8)	15	(0.6)
용인시	33	(4.0)	53	(6.4)	74	(7.1)	160	(6.0)
이천시	14	(1.7)	28	(3.4)	26	(2.5)	68	(2.5)
의왕시	2	(0.2)	2	(0.2)	3	(0.3)	7	(0.3)
과천시	2	(0.2)	1	(0.1)	4	(0.4)	7	(0.3)
하남시	9	(1.1)	8	(1.0)	8	(0.8)	25	(0.9)
광명시	20	(2.4)	25	(3.0)	39	(3.8)	84	(3.1)
군포시	27	(3.3)	36	(4.4)	24	(2.3)	87	(3.2)
부천시	59	(7.2)	95	(11.5)	108	(10.4)	262	(9.8)
시흥시	22	(2.7)	21	(2.5)	34	(3.3)	77	(2.9)
안양시	53	(6.4)	44	(5.3)	33	(3.2)	130	(4.8)
김포시	19	(2.3)	22	(2.7)	30	(2.9)	71	(2.6)
고양시	60	(7.3)	54	(6.5)	87	(8.4)	201	(7.5)
파주시	15	(1.8)	11	(1.3)	17	(1.6)	43	(1.6)
양주시	13	(1.6)	9	(1.1)	13	(1.3)	35	(1.3)
동두천시	6	(0.7)	6	(0.7)	3	(0.3)	15	(0.6)
연천군	12	(1.5)	9	(1.1)	7	(0.7)	28	(1.0)
의정부시	37	(4.5)	48	(5.8)	43	(4.1)	128	(4.8)
포천시	21	(2.5)	15	(1.8)	11	(1.1)	47	(1.7)
구리시	29	(3.5)	23	(2.8)	35	(3.4)	87	(3.2)
남양주시	127	(15.4)	90	(10.9)	123	(11.9)	340	(12.7)
가평군	7	(0.8)	8	(1.0)	6	(0.6)	21	(0.8)
기타지역	0	(0.0)	0	(0.0)	3	(0.3)	3	(0.1)
평균	27		27		33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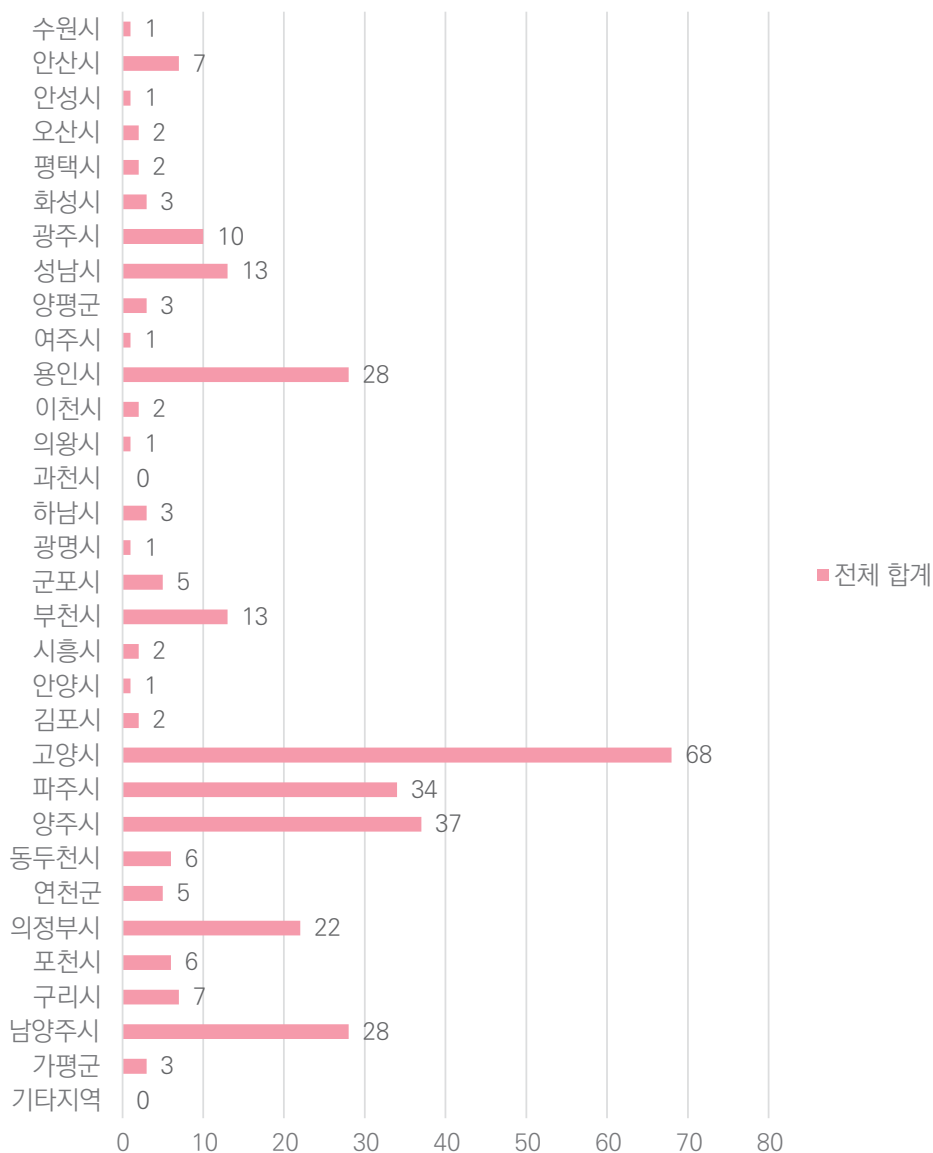
[표6 - 시군별 가정학대 판정건수]

3) 시군별 시설학대 판정건수

[표7]에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시군별 학대사례 중 시설학대 판정건수를 보면 고양시가 68건, 양주시가 37건, 파주시가 34건으로 가장 많았고, 과천시 0건으로 유일하게 경기도에서 아직 시설학대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이다.

연차별로 비교해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고양시가 각각 17건, 19건, 32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이사항으로 시설사례의 경우 경기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이 관할하고 있는 지역에 집중되어 있었고, 이 중 양주시의 경우 2018년과 2019년에는 각각 7건, 2020년에는 23건의 시설학대가 발생하였다. ²⁾



[도표7 - 시군별 시설학대 판정건수 / 2018년~2020년]

2) 관할지역: 고양시, 파주시, 양주시, 동두천시, 연천군, 의정부시, 포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가평군

구분	시군별 시설학대 판정건수							
	2018		2019		2020		합계	
계	71	(100)	89	(100)	157	(100)	317	(100)
수원시	0	(0.0)	0	(0.0)	1	(0.6)	1	(0.3)
안산시	2	(2.8)	1	(1.1)	4	(2.5)	7	(2.2)
안성시	0	(0.0)	0	(0.0)	1	(0.6)	1	(0.3)
오산시	0	(0.0)	1	(1.1)	1	(0.6)	2	(0.6)
평택시	0	(0.0)	1	(1.1)	1	(0.6)	2	(0.6)
화성시	1	(1.4)	0	(0.0)	2	(1.3)	3	(0.9)
광주시	2	(2.8)	4	(4.5)	4	(2.5)	10	(3.2)
성남시	1	(1.4)	3	(3.4)	9	(5.7)	13	(4.1)
양평군	2	(2.8)	0	(0.0)	1	(0.6)	3	(0.9)
여주시	0	(0.0)	0	(0.0)	1	(0.6)	1	(0.3)
용인시	3	(4.2)	9	(10.1)	16	(10.2)	28	(8.8)
이천시	2	(2.8)	0	(0.0)	0	(0.0)	2	(0.6)
의왕시	0	(0.0)	1	(1.1)	0	(0.0)	1	(0.3)
과천시	0	(0.0)	0	(0.0)	0	(0.0)	0	(0.0)
하남시	0	(0.0)	3	(3.4)	0	(0.0)	3	(0.9)
광명시	1	(1.4)	0	(0.0)	0	(0.0)	1	(0.3)
군포시	1	(1.4)	0	(0.0)	4	(2.5)	5	(1.6)
부천시	5	(7.0)	4	(4.5)	4	(2.5)	13	(4.1)
시흥시	0	(0.0)	0	(0.0)	2	(1.3)	2	(0.6)
안양시	1	(1.4)	0	(0.0)	0	(0.0)	1	(0.3)
김포시	0	(0.0)	2	(2.2)	0	(0.0)	2	(0.6)
고양시	17	(23.9)	19	(21.3)	32	(20.4)	68	(21.5)
파주시	9	(12.7)	9	(10.1)	16	(10.2)	34	(10.7)
양주시	7	(9.9)	7	(7.9)	23	(14.6)	37	(11.7)
동두천시	3	(4.2)	0	(0.0)	3	(1.9)	6	(1.9)
연천군	1	(1.4)	0	(0.0)	4	(2.5)	5	(1.6)
의정부시	2	(2.8)	10	(11.2)	10	(6.4)	22	(6.9)
포천시	1	(1.4)	2	(2.2)	3	(1.9)	6	(1.9)
구리시	3	(4.2)	2	(2.2)	2	(1.3)	7	(2.2)
남양주시	7	(9.9)	11	(12.4)	10	(6.4)	28	(8.8)
가평군	0	(0.0)	0	(0.0)	3	(1.9)	3	(0.9)
기타지역	0	(0.0)	0	(0.0)	0	(0.0)	0	(0.0)
평균	2		3		5		3	

[표7 - 시군별 시설학대 판정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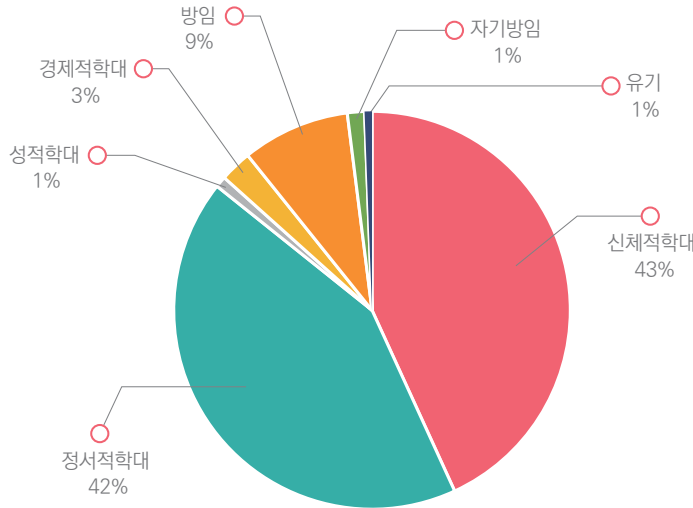
라. 학대 유형

[표8]에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학대유형을 보면 신체적 학대 2,577건, 정서적 학대 2,536건으로 가장 많았고 유기학대가 33건으로 가장 적었다.

연차별 비교해보면 2018년과 2019년에는 정서적 학대 - 신체적 학대 - 방임학대 순으로 나타났다. 2020년에는 신체적 학대 - 정서적 학대 - 방임학대 순으로 나타났다.

학대유형은 1개 사례에 2개 이상 중복될 수 있었으며, 보통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가 중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이사항으로 방임학대의 경우에는 어르신 낙상 등이 발생하였으나 신속한 발견과 의료적 조치를 취하지 못한 시설학대사례가 포함되어 있다.



[도표8 - 학대유형 합계 / 2018년~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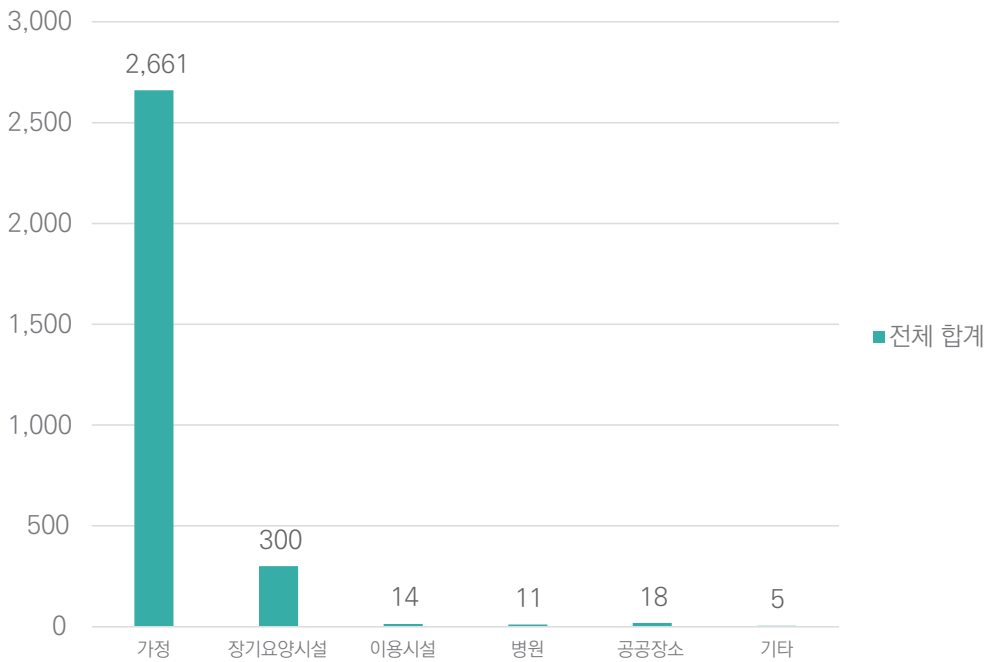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합계	
	건수	(%)	건수	(%)	건수	(%)	건수	(%)
계	1,341	(100)	2,076	(100)	2,543	(100)	5,960	(100)
신체	579	(43.2)	860	(41.4)	1,138	(44.8)	2,577	(43.2)
정서	556	(41.5)	941	(45.3)	1,039	(40.9)	2,536	(42.6)
성	16	(1.2)	23	(1.1)	17	(0.7)	56	(0.9)
경제	43	(3.2)	33	(1.6)	78	(3.1)	154	(2.6)
방임	112	(8.4)	177	(8.5)	233	(9.2)	522	(8.8)
자기방임	20	(1.5)	42	(2.0)	20	(0.8)	82	(1.4)
유기	15	(1.1)	0	(0.0)	18	(0.7)	33	(0.6)

[표8 - 학대유형]

마. 학대발생 장소

[표9]에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노인학대 발생장소를 보면 가정 내 학대사례가 2,661건으로 전체 학대사례 중 88%를 차지했다.

특이사항 장기요양시설 내 학대사례는 총 300건이었으며 2018년부터 65건, 90건, 145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었다. 또한 이용시설과 병원에서도 학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표9 - 월별 학대사례 판정건수 / 2018년~2020년]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합계
계	901	914	1,194	3,009
가정	824	810	1,027	2,661
장기요양시설 ³⁾	65	90	145	300
이용시설 ⁴⁾	6	0	8	14
병원	3	4	4	11
공공장소	3	8	7	18
기타	-	2	3	5

[표9 - 학대발생 장소]

3)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4)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2. 노인학대 상담현황

학대상담은 접수상담, 진행상담, 종결상담, 사후관리로 분류된다. 접수상담은 신고접수 시 초기상담을 의미하고, 진행상담은 사례개입을 위해 진행되는 모든 상담을 의미하며, 학대피해노인 및 가족상담, 관련자 상담, 현장조사 및 방문상담 등이 이에 해당된다. 종결상담은 사례를 종결하기 위해 상담한 상담을 의미한다. 사후관리는 종결된 사례에 대해 학대피해노인이 안전한지, 학대 재발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해 일정기간 정기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직접 방문 또는 전화 등을 통하여 재발여부를 확인한다. 또한 서비스를 의뢰한 연계기관과 협력하여 사후관리를 실시하기도 하는데 시설보호의 경우 시설 측과 협의를 통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단, 사후관리가 어려운 사례에 대해서는 자체사례회의를 통하여 사후관리 여부를 판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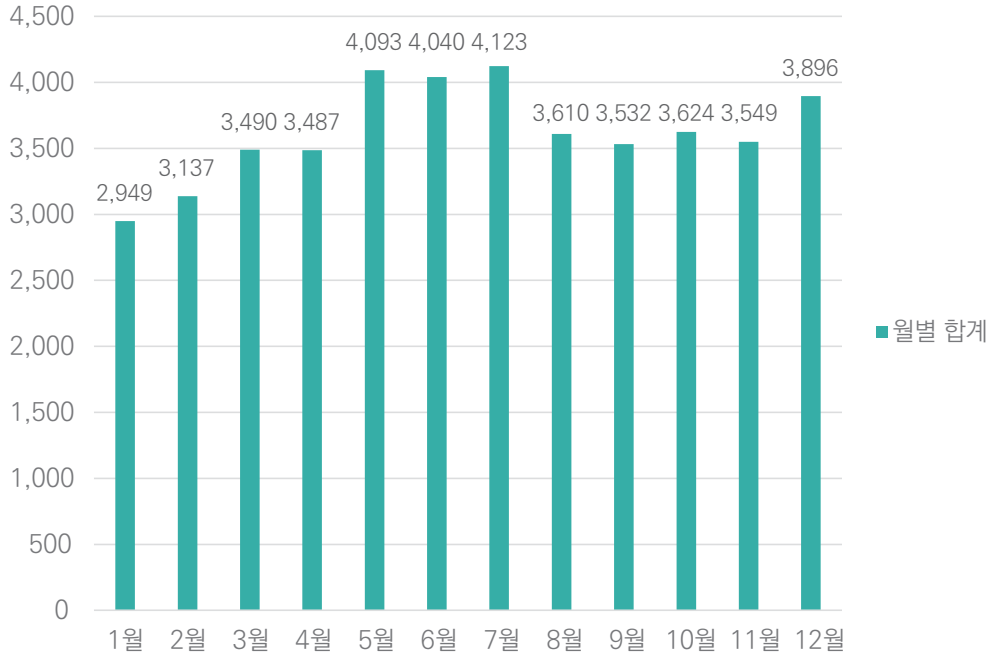
반면, 일반상담은 단순 정보제공 등의 일반사례에 대한 상담으로 대부분 1~2회 상담이 이루어지며 보통 정보제공과 동시에 상담이 종료된다.

가. 월별 학대사례 상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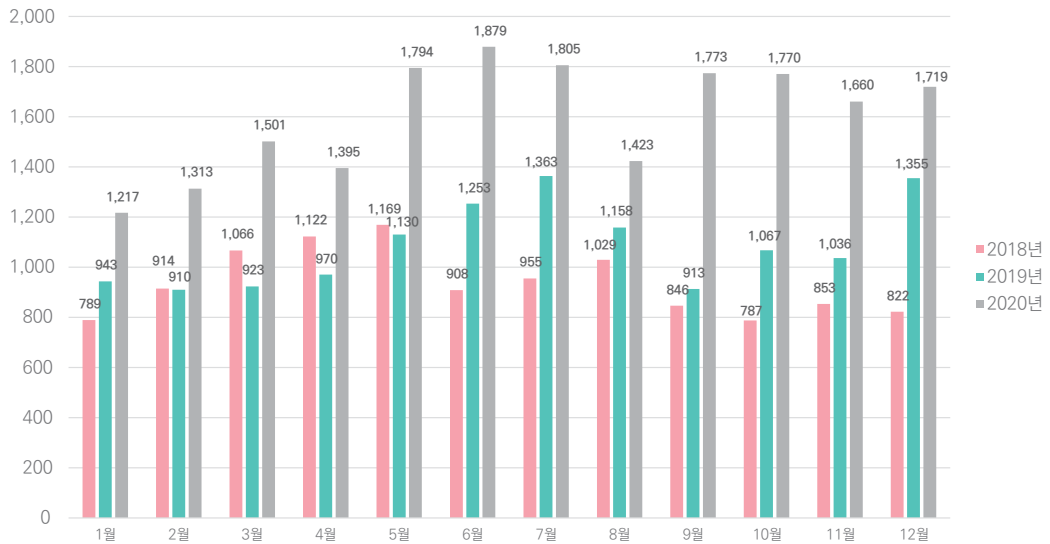
[표10]에서 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노인학대사례 상담건수는 11,260건, 13,021건, 19,249건으로 점차 증가하였다. 학대사례 상담이 가장 많았던 달은 7월로 4,123건이었으며 가장 적은 달은 1월로 2,949건이었다.

연차별로 학대사례 상담건수를 비교해보면 2018년에는 5월과 4월이 각각 1,169건, 1,122건으로 가장 많았고, 10월이 787건으로 가장 적었다. 2019년에는 7월과 12월이 각각 1,363건, 1,355건으로 가장 많았고 2월과 9월이 각각 910건, 913건으로 가장 적었다. 2020년에는 6월과 7월이 각각 1,879건, 1,805건으로 가장 많았고 1월이 1,217건으로 가장 적었다.

월별 평균 상담건수는 2018년이 938건, 2019년이 1,085건, 2020년이 1,604건으로 3년 동안 월 평균 1,209건의 학대사례 상담을 진행하였다.



[도표10-월별 학대사례 상담 / 2018년~2020년]



[도표10-월별 학대사례 상담]

구분	월별 학대사례 상담							
	2018		2019		2020		합계	
계	11,260	(100)	13,021	(100)	19,249	(100)	43,530	(100)
1월	789	(7.)	943	(7.2)	1,217	(6.3)	2,949	(6.8)
2월	914	(8.1)	910	(7.)	1,313	(6.8)	3,137	(7.2)
3월	1,066	(9.5)	923	(7.1)	1,501	(7.8)	3,490	(8.)
4월	1,122	(10.)	970	(7.4)	1,395	(7.2)	3,487	(8.)
5월	1,169	(10.4)	1,130	(8.7)	1,794	(9.3)	4,093	(9.4)
6월	908	(8.1)	1,253	(9.6)	1,879	(9.8)	4,040	(9.3)
7월	955	(8.5)	1,363	(10.5)	1,805	(9.4)	4,123	(9.5)
8월	1,029	(9.1)	1,158	(8.9)	1,423	(7.4)	3,610	(8.3)
9월	846	(7.5)	913	(7.)	1,773	(9.2)	3,532	(8.1)
10월	787	(7.)	1,067	(8.2)	1,770	(9.2)	3,624	(8.3)
11월	853	(7.6)	1,036	(8.)	1,660	(8.6)	3,549	(8.2)
12월	822	(7.3)	1,355	(10.4)	1,719	(8.9)	3,896	(9.)
평균	938		1,085		1,604		1,2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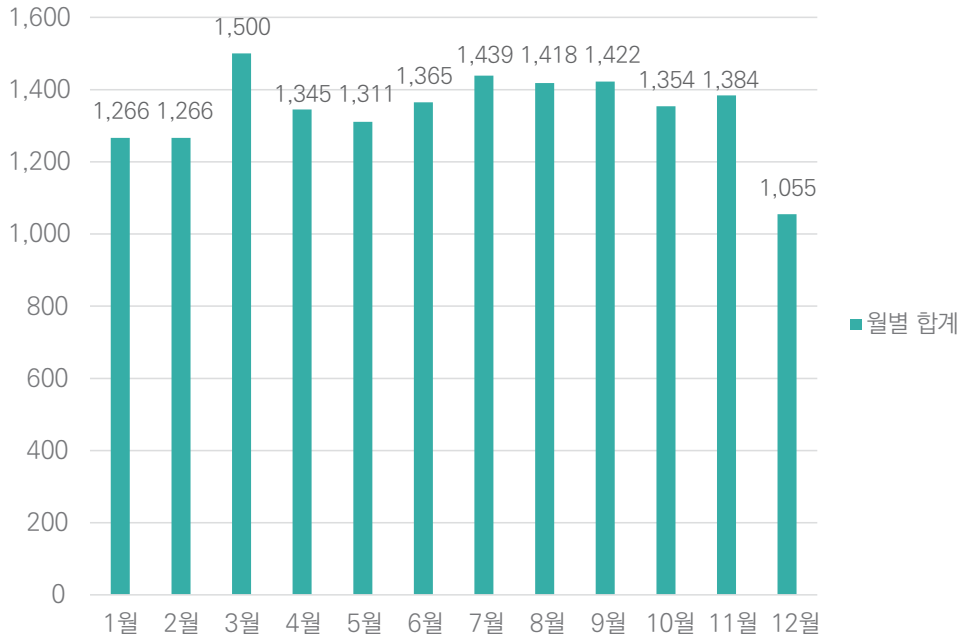
[표10-월별 학대사례 상담]

나. 월별 일반사례 상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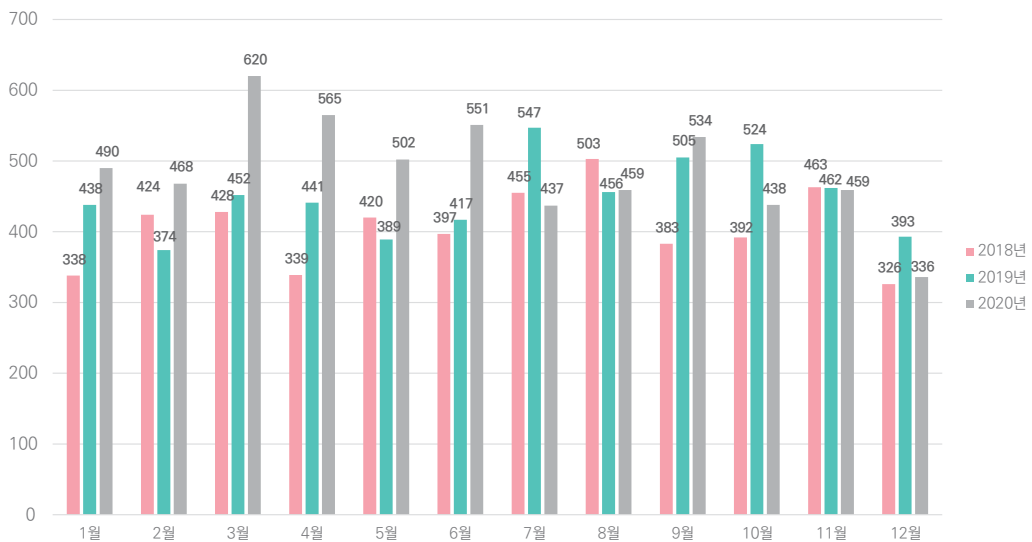
[표11]에서 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일반사례 상담건수는 4,868건, 5,398건, 5,859건으로 점차 증가하였다. 상담이 가장 많았던 달은 3월로 1,500건이었으며 가장 적은 달은 12월로 1,055건이었다.

연차별로 일반사례 상담건수를 비교해보면 2018년에는 8월이 503건으로 가장 많았고 12월이 326건으로 가장 적었다. 2019년에는 10월 524건으로 가장 많았고 2월 374건으로 가장 적었다. 2020년에는 3월이 620건으로 가장 많았고 12월이 336건으로 가장 적었다.

월별 평균 상담건수는 2018년이 406건, 2019년이 450건, 2020년이 488건으로 3년 동안 월 평균 448건의 일반사례 상담을 진행하였다.



[도표11-월별 일반사례 상담 / 2018년~2020년]



[도표11-월별 일반사례 상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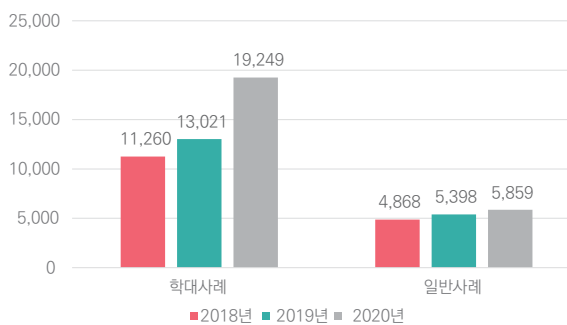
구분	월별 일반사례 상담							
	2018		2019		2020		합계	
계	4,868	(100)	5,398	(100)	5,859	(100)	16125	(100)
1월	338	(6.9)	438	(8.1)	490	(8.4)	1,266	(7.9)
2월	424	(8.7)	374	(6.9)	468	(8.0)	1,266	(7.9)
3월	428	(8.8)	452	(8.4)	620	(10.6)	1,500	(9.3)
4월	339	(7.0)	441	(8.2)	565	(9.6)	1,345	(8.3)
5월	420	(8.6)	389	(7.2)	502	(8.6)	1,311	(8.1)
6월	397	(8.2)	417	(7.7)	551	(9.4)	1,365	(8.5)
7월	455	(9.3)	547	(10.1)	437	(7.5)	1,439	(8.9)
8월	503	(10.3)	456	(8.4)	459	(7.8)	1,418	(8.8)
9월	383	(7.9)	505	(9.4)	534	(9.1)	1,422	(8.8)
10월	392	(8.1)	524	(9.7)	438	(7.5)	1,354	(8.4)
11월	463	(9.5)	462	(8.6)	459	(7.8)	1,384	(8.6)
12월	326	(6.7)	393	(7.3)	336	(5.7)	1,055	(6.5)
평균	406		450		488		448	

[표11-월별 일반사례 상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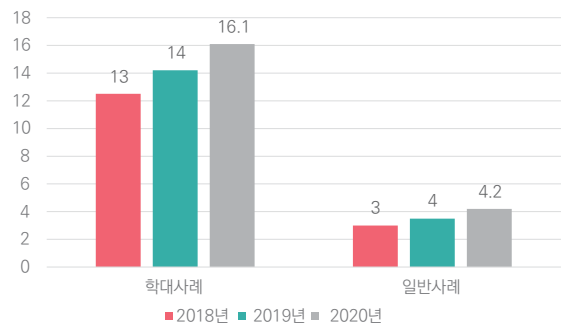
다. 사례 당 평균상담

[표12]에서 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학대 사례 평균 상담건수는 12.5건, 14.2건, 16.1건으로 점차 증가하였다. 마찬가지로 일반사례 평균 상담건수도 3.0건, 3.5건, 4.2건으로 점차 증가하였다.

특이사항으로 학대사례의 경우 총 사례건수, 총 상담건수, 평균 상담건수는 매년 증가한 반면 일반사례는 총 사례건수는 감소했지만 총 상담건수, 평균 상담건수는 증가하는 차이점을 보였다.



[도표12-사례당 평균 상담건수-총 상담 건수]



[도표12-사례당 평균 상담건수]

구분	학대사례			일반사례		
	2018년	2019년	2020년	2018년	2019년	2020년
총 사례	901	914	1194	1,614	1,531	1,399
총 상담	11,260	13,021	19,249	4,868	5,398	5,859
평균 상담	12.5	14.2	16.1	3.0	3.5	4.2

[표12-사례당 평균 상담건수]

3. 신고자 및 접수, 인지

노인학대 신고자의 유형은 크게 신고의무자와 비신고의무자로 구분되며 신고의무자는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 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 ①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2. 제27조의2에 따른 방문요양과 돌봄이나 안전 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7조에 따른 노인복지상담원
 3.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인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5.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를 위한 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7.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8.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9.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1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의료기사
 13.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
 14. 「지역보건법」 제2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
 15.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 비신고의무자 대상 〉

- 관련기관: 어르신 지킴이단, 경찰관, 사회복지시설종사자, 기타 관련기관 종사자 등
- 친족: 배우자, 아들, 며느리, 딸, 사위, 손자녀, 친척 등
- 타인: 기타 타인, 동거인, 이웃, 익명, 친구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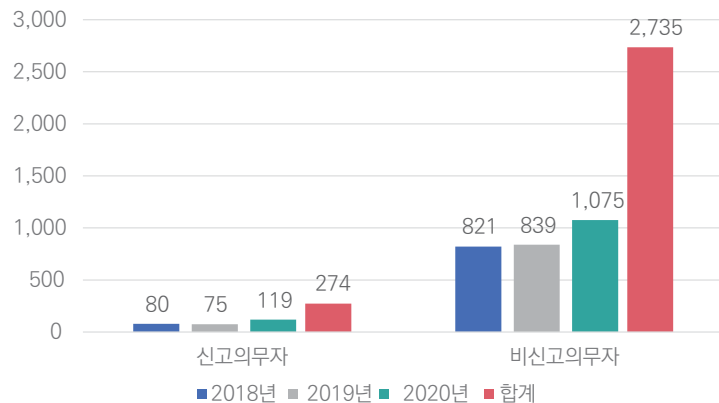
가. 신고자 유형

[표13]에서 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신고자 유형을 보면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접수는 80건, 75건, 119건으로 점차 증가하였고 비신고의무자 또한 821건, 839건, 1,075건으로 매년 증가하였다.

연차별로 신고의무자 중 접수건수 많은 순서로 비교해보면 2018년에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 가정폭력 관련 종사자 순이었다. 2019년부터는 노인복지시설종사자 -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업무 담당 공무원 순이었다. 2020년에는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순으로 나타났다.

특이사항으로 매년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와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는 신고접수건수가 증가하였으며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감소하였다.

비신고의무자의 신고접수는 관련기관 종사자가 가장 많았으며, 매년 증가하였다. 관련기관 종사자의 유형은 경찰서,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행정복지센터 주무관(관계자), 통합사례관리사, 독거노인관리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변호사, 지자체 민원 등이 있었다.



[도표13-신고자 유형 / 2018년-2020년]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합계
합계		901	914	1,194	3,009
신고의무자	소계	80	75	119	274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3	6	9	18
	방문요양과돌봄, 안전, 확인등의서비스종사자	1	4	0	5
	노인복지시설종사자	20	27	55	102
	가정폭력관련종사자	5	2	6	13
	사회복지전담공무원	45	21	19	85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관련종사자	0	1	1	2
	재가장기요양기관종사자	2	1	12	15
	구급대대원	0	0	0	0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0	0	0	0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0	0	0	0
	성폭력 피해상담소 및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종사자	1	0	0	1
	응급 구조사 및 의료기사	0	0	1	1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직원	1	5	5	11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2	7	10	19
	지역보건 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	0	1	1	2
비신고의무자	소계	821	839	1,075	2,735
	학대피해노인	56	43	49	148
	학대행위자	0	0	1	1
	친족	79	77	114	270
	타인	18	22	12	52
관련기관 종사자	668	697	899	2,264	

[표13 - 신고접수 유형]

나. 신고접수 경로

신고접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신고 접수된 사례의 응급성 정도, 현재 학대피해노인의 안전 및 학대 지속성 여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대처 유형 등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정보를 수집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신고접수 경로는 정부민원안내 콜센터 110, 연중 24시간 노인 학대 신고상담전화 1577-1389, 112 또는 119 신고에 의해 접수된다.

2016년 7월부터는 정부민원안내 콜센터 110으로 걸려온 노인학대 관련 문의를 콜센터 상담사가 접수한 후 각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에 연계하기로 추진되어 신고접수 경로에 포함되었다.

[표14]에서 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신고접수 경로를 보면 경찰로부터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되는 노인학대 의심사례 통보서가 가장 많았다. 행정복지센터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접수되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였고, 129(보건복지상담센터)의 접수사례는 감소하였다.

특이사항으로 1366(여성긴급전화)에서 이관되는 학대사례가 있었다.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합계
계	901	914	1,194	3,009
자체접수	302	277	397	976
129(보건복지상담센터)	19	14	10	43
110(정부민원안내콜센터)	0	1	0	1
타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4	5	3	12
경찰	567	586	740	1,893
행정복지센터	1	11	17	29
희망복지지원단	4	2	0	6
경로당	0	1	0	1
노인돌봄서비스 생활관리사	1	2	1	4
건강보험공단	0	1	7	8
노인일자리사업	0	0	1	1
지자체(시청,도청)	3	10	7	20
정신건강복지센터	0	3	1	4
의료기관	0	1	5	6
1366 이관	0	0	5	5

[표14 - 신고접수 경로]

다. 노인보호전문기관 인지경로

[표15]에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노인보호전문기관 인지경로를 '알고 있었음'이 2,582건, 86%로 가장 많았고 본인이나 지인의 노인학대사례 개입경험이 있어서 기관을 인지하고 있던 경우가 34건으로 가장 적었다. '알고 있었음'을 답변한 대상은 경찰서 관계자가 가장 많았고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를 통해 기관을 인지하게 된 경우도 있었다.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합계
계	901	914	1,194	3,009
대중매체	28	14	17	59
직접홍보	18	15	4	37
타기관 안내	49	51	51	151
주변인	25	17	23	65
인터넷	25	23	33	81
알고있었음	735	788	1,059	2,582
개입경험 유	21	6	7	34

[표15 - 노인보호전문기관 인지경로]

4. 노인학대예방 및 노인인권교육

[표16]에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노인학대예방교육은 진행횟수와 참여인원이 매년 감소하였다. 신고의무자 교육은 228건(11,879명), 189건(9,281명), 92건(1,675명), 비신고의무자 교육은 272건(13,028명), 244건(11,331명), 118건(3,764명)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볼 수 있었다. 노인인권교육은 2019년부터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진행하게 되었으며 2년 동안 총 97건, 13,105명이 교육을 수강하였다.

특이사항으로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집합교육이 불가해짐에 따라 노인학대예방교육과 노인인권교육 모두 온라인 실시간 교육이 시작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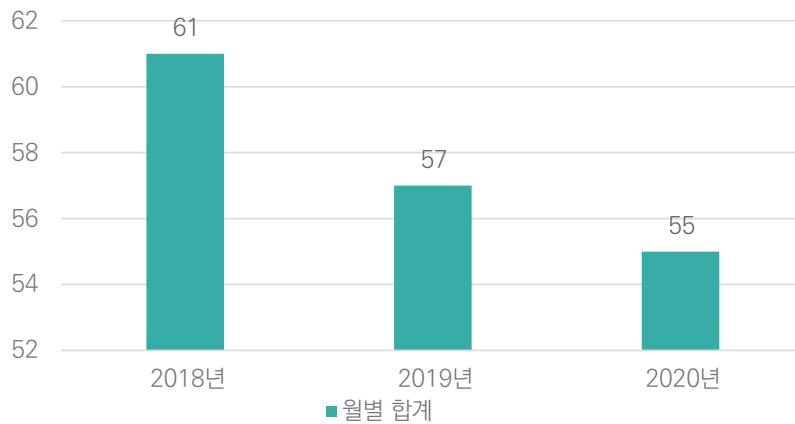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합계	
노인학대 예방교육	신고 의무자	회	228	189	92	509
		명	11,879	9,281	1,675	22,835
	비신고 의무자	회	272	244	118	634
		명	13,028	11,331	3,764	28,123
노인인권교육		회	-	60	37	97
		명	-	12,198	907	13,105

[표16 - 노인학대예방 및 노인인권교육]

5.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가. 입소현황

[표17]을 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경기도 전체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입소인원은 총 173명이며, 61명, 57명, 55명으로 해마다 감소하였다. 기관별로 비교해보면 경기북부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는 총 72명이 입소하였으며 2018년부터 29명, 23명, 20명으로 매년 감소하였다. 반면, 경기서부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는 총 101명이 입소하였으며 2018년부터 21명, 34명, 35명으로 매년 증가하였다.



[도표17 - 입소현황 / 2018년~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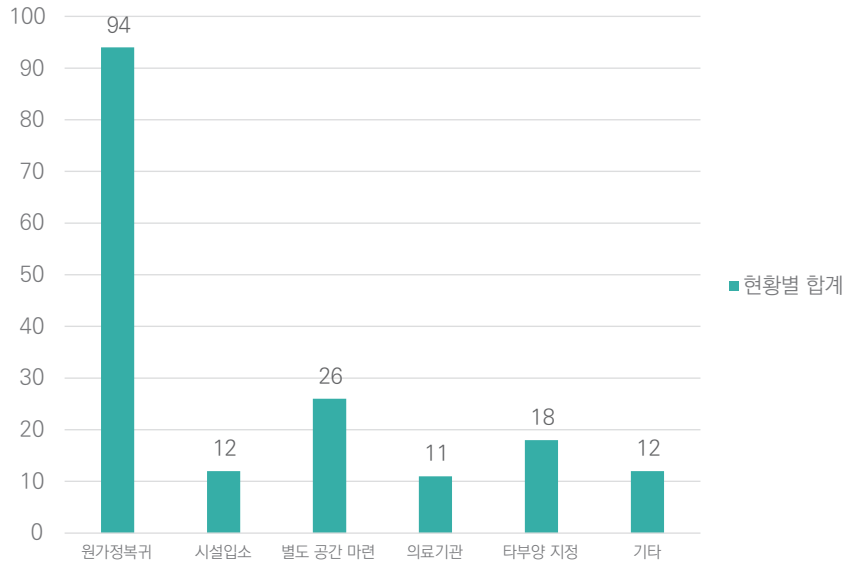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합계
계	61	57	55	173
경기북부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29	23	20	72
경기서부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32	34	35	101

[표17 - 입소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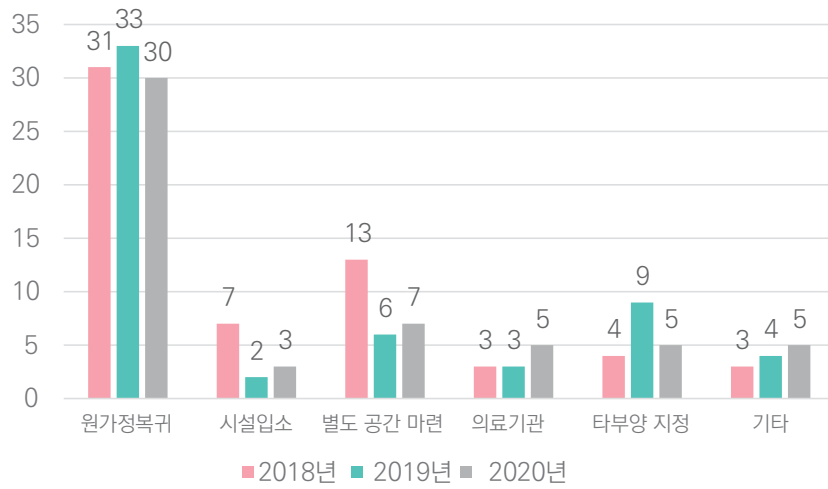
나. 퇴소유형

[표18]을 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경기도 전체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퇴소인원은 입소인원과 동일하게 173명이었다. 원가정으로 복귀한 학대피해노인이 9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별도공간마련이 26명, 타부양지정이 18명으로 뒤를 이었다. 의료기관으로 퇴소한 피해노인은 11명으로 가장 적었다.

특이사항으로 원가정 복귀의 경우에는 접근금지명령을 통해 학대행위자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거나, 정신병원 행정입원으로 분리되어 복귀한 사례도 있었다.



[도표18 - 퇴소현황 / 2018년~2020년]



[도표18 - 퇴소현황]

구분	2018	2019	2020	계
합 계	61	57	55	173
원가정복귀	31	33	30	94
시설입소	7	2	3	12
별도 공간 마련	13	6	7	26
의료기관	3	3	5	11
타부양 지정	4	9	5	18
기타	3	4	5	12

[표18 - 퇴소현황]

다. 서비스 내용

[표19]을 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학대피해노인에게 가장 많이 제공된 서비스는 건강프로그램으로 10,578건이 진행되었으나, 2018년부터 5,444건, 2,587건, 2,547건으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두 번째로 많이 제공된 서비스는 기타의료지원서비스로 2,996건 진행되었으며, 2018년부터 918건, 891건, 1,187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또한, 학대피해노인의 입소시기에 따라서 나들이, 명절, 어버이날, 생신잔치, 송년행사 등 사회성 향상 및 문화여가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구분		입소자 서비스내용			
		2018	2019	2020	합계
계		1,536	1,477	1,653	4,666
법률서비스	연결	2	0	4	6
	지원	0	0	0	0
의료서비스	연계	258	89	95	442
	지원	209	217	139	565
	기타	918	891	1,187	2,996
상담	쉽터	149	280	228	657
	노보	163	107	132	402
	전문가	262	97	76	435
	가족상담	0	1	1	2
	기타	0	0	0	0
프로그램	건강	5,444	2,587	2,547	10,578
	문화	218	25	23	266
	회복	36	25	9	70
	심리	1,511	938	455	2,904
	기타	9	79	92	180

[표19 - 서비스 내용]

제Ⅳ장

노인보호전문기관 특화사업



경기북부지역 학대피해노인의 재학대예방 및 돌봄 제공을 위한 ‘돌봄 플러스’구축사업 (수행기관: 경기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I. 사업명

경기북부지역 학대피해노인의 재학대예방 및 돌봄 제공을 위한
‘돌봄 플러스’구축사업 (수행기관: 경기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II. 사업목적

- 방문 사후관리를 통한 재학대 예방
- 맞춤형 서비스 연계 및 경기북부 돌봄 플러스 구축

III. 사업개요

- 기 간 2020년 7월 ~ 2021년 1월 (총 7개월)
- 대 상 경기북부지역 학대피해노인 60명
- 내 용
 - 1) 방문사후관리를 통한 재학대 예방
 - 핵심참여자 방문 사후관리 실시
 - 핵심참여자 우울감, 자존감 사전·사후 검사
 - 핵심참여자 안부확인 및 재학대 여부 및 관련정보 수집
 - 핵심참여자 물품 지원, 교육, 정보 등 서비스 제공
 - 2) 맞춤형 서비스 연계 및 돌봄 플러스 구축
 - 경기북부 돌봄 플러스 구축
 - 지역사회 연계 협력을 통한 핵심참여자 서비스 제공
 - 핵심참여자 재학대 예방 및 노인학대 사례 발굴
 - 유관기관 통합사례회의를 통한 복지 연계플랫폼 구축

IV. 성과 및 평가

- 사업성과
 - 1) 돌봄 플러스 방문·전화 사후관리
 - 핵심참여자 69명 참여 / 사후관리 262건 (방문 160건, 전화 102건) 진행
 - 우울수준, 자기효능감, 재학대 위험요인,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실시(32명)
 - 핵심참여자 대상자 지원물품 지원 (코로나 대응 안전물품)
 - 정서안정프로그램 원예활동 대상자 개별상황에 따라 진행 (참여인원: 32명)

- **사업성과**
 - 핵심참여자 대면상담을 통한 욕구 및 재학대 여부 직접 확인
 -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활동 축소, 학대행위자와의 거주로 인한 사업 참여 거부 등의 이유로 활동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하반기에 연락이 두절되거나 학대피해노인 중 사후관리의 필요성이 높은 대상자를 선발하여 돌봄 활동 진행

- 2) 맞춤형 서비스 연계 및 돌봄 구축
 - 사업인력 사례회의 진행 (19회)
 - 핵심참여자 식료품 및 생필품, 난방용품 등 긴급지원 (참여인원: 7명)
 - 기관 홈페이지 및 온라인(SNS)에 돌봄 플러스 활동 관련 내용 기재 (11회)
 - 유관기관 내방 사업 홍보 실시 (80회)
 - 코로나19로 인해 유관기관 직접홍보는 유선 및 서신으로 대체

- **총평 및 제언**
 - 1) 재학대 발생률 감소
 - 돌봄 플러스 구축사업 실시 이후 재학대 발생 건수가 31건(20.01.~20.07.)에서 14건(20.08.~21.01.)으로 54.8% 재학대 발생률이 감소한 것을 확인

 - 2) 핵심참여자의 사업 참여에 따른 변화
 - 자기효능감 정도는 사전점수 21.2점, 사후점수 22.7점으로 1.5점 증가로 대상자의 자기효능감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우울수준은 사전검사 10.4점, 사후점수 6.7점으로 3.7점 감소로 대상자의 우울감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재학대 위험요인은 사전점수 17.3점, 사후점수 16.5점으로 0.8점 감소로 재학대 위험요인 약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프로그램 만족도는 총 50점 만점에 42.9점으로 대상자 대부분 프로그램에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보임.

 - 3) 홍보로 인한 지역사회 관심도 향상에 기여
 - 기관 및 돌봄 플러스 구축사업 홍보 관련 기관 방문 80건 진행, 사업 진행 내용 기관 홈페이지 및 온라인(SNS) 기재 11건 진행으로 돌봄 플러스 사업에 대한 인식과 관심도를 향상시킴.
 - 향후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지역사회 유관기관 직접홍보 및 MOU 업무협약을 실시하여 핵심참여자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 4) 향후 사업 보완의 필요성
 - 핵심참여자 선발인원을 줄이되 대상별 개입 회기를 늘려 보다 맞춤 별 질 높은 사례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학대피해노인 뿐 아니라 학대 행위자 또는 그 가정의 동거인의 개입도 진행하고자 함.

• **총평
및 제언**

- 사례 개입 및 사업 참여 거부, 학대사례로 판정되지 않았으나 학대발생 위험요인이 내재된 경우의 대상자도 사례회의를 통해 개입의 필요성이 있을 시 대상자로 선정하여 안부확인 실시하여 재학대 발생을 감소시키고자 함.
- 핵심참여자 및 그 가정의 특성 및 문제요인, 욕구 등에 따라 분야별 전문적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사례 대상으로 지역사회 내 전문기관 연계를 통하여 맞춤형 통합솔루션 회의를 실시하고 지속해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안전망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V. 진행사진



안부확인 및 관련 척도 검사



지원물품 배부



정서안정프로그램(원예활동)



긴급지원(식료품 및 생필품)

‘노인학대가정 재학대 예방을 위한 라이프케어 서포터즈 지원사업’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사업 (수행기관: 경기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I. 사업명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사업 (수행기관: 경기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가정 재학대 예방을 위한 라이프케어 서포터즈 지원사업’

II. 사업목적

- 가정 내 노인학대 및 재학대 예방·대응 체계 구축
- 통합적 서비스 지원을 통한 정서안정 및 가족 지지체계 강화
- 노인학대 사례에 대한 사후관리 및 모니터링 체계 (사회적 안정망) 구축

III. 사업개요

- 기 간 2020. 2. 1. ~ 2021. 1. 31.
- 대 상 경기서부권역 가정 내 노인 학대 사례 26case
- 내 용
 - 정서안정 프로그램: 참여 가정으로 전문 상담사를 파견하여 심리·정서적 지원을 위한 개별, 가족 상담 실시
 - 지역사회맞춤서비스연계: 참여 가정 욕구 사정 후, 통합사례회의 및 업무 연락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 연계 실시
 - 자기결정권강화 사업: 스스로 의사결정이 힘든 노인의 권리 옹호를 위하여 대리인 추천 및 법률지원서비스 제공

IV. 성과 및 평가

- 사업성과
 - 학대피해가정 26case 진행
 - 재학대 피해가정 특성 분석
 - 피해자와 학대행위자와의 관계

계	배우자	아들	손자녀
26	14	10	2

• 사업성과 - 학대원인분석(중복체크)

구분	학대행위 원인 내용	해당건수
피해자 원인	사회적지지·필요서비스 정보부족	5
	행위자에 대한 정서적(정신적)의존	4
	신체적 의존	1
	가족과의 교류(왕래)부족	1
행위자 원인	감정조절 장애	13
	행위자 알코올장애	12
	피해노인에게 경제적 의존	6
	피해노인에게 주택적 의존	4
	피해노인에게 정서적(정신적) 의존	3
	의처증, 의무증	3

• 총평 및 제언

- 기존, 학대피해노인 중심의 서비스 제공에서 벗어나, ‘노인학대 피해가정’에 대한 통합적 서비스 지원으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사례개입 범위를 확장하여 근본적인 가정 내 노인학대 위험요인을 파악 및 해소를 통해 본 기관의 재학대 발생율을 73%로 감소시키는 마중물의 역할이 됨.
- 가정 내 전문상담사 파견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해 자기효능감, 긍정적 복지감이 증가되었고 우울수준, 분노조절, 부정적 복지감이 감소되어 피해 노인 및 행위자의 심리적 안정, 불안 및 스트레스 감소를 도모하였으며, 행위자의 태도변화를 유도하여 위험요인이 경감됨.
- 노인 학대와 관련하여 보건의료, 요양, 복지, 주거, 취업, 법률 등 분야별 전문적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직접 연계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함.

V. 진행사진



정서안정프로그램



통합사례회의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아동·청소년 효행교육 사업 (수행기관: 경기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I. 사업명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아동·청소년 효행교육 사업
(수행기관: 경기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II. 사업목적

어르신들을 효행교육 전문 강사로 양성하고, 아동·청소년 등 '3세대'를 대상으로 효행교육을 실시하여 최근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1·3세대 갈등 및 노인학대 등 여러 사회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

III. 사업개요

- 기 간 2020.01.01. ~ 2020.12.31. (2018.02.01.~2020.12.31.(3년))
- 대 상 1) 경기북부10개 시·군 유치원 및 어린이집 아동
2) 경기북부10개 시·군 초등·중학교 및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 내 용 1) 어르신들로 구성된 효행교육 전문강사 양성 및 노인 일자리 창출
- 아동 대상 2팀, 청소년 대상 1팀 총 15명 양성

2) 노인인식개선을 위한 찾아가는 노인학대예방 및 효행교육 제공
- 아동대상 노인학대예방 인형극
- 청소년 대상 노인인식개선 교육, 유사체험, 노인학대예방 교육, 마인드맵

3)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효행교육 프로그램 개발

4) 노인인식개선 사업 확산을 위한 홍보 및 네트워크 구축

IV. 성과 및 평가

- 사업성과 1) 아동·청소년 효행교육 강사 보수교육 실시
- 교육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한 이해와 교육에 활용될 수 있는 기법 습득
- 신규 효행교육 강사단(3명)을 확보한 후 보수교육을 진행하여 사업 정상화

- **사업성과**
 - 2) 아동·청소년 효행교육 활동 진행
 - 가) 아동 대상 활동
 - 경기북부 10개 시군구 어린이집 56회 진행, 86% 달성
 - 아동 대상 효행교육은 코로나19 감염 취약계층으로 방역에 집중해야 하기에 인형극 관람을 중점으로 진행하였으며, 인형극 무대를 배경으로 인형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남길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였음.
 - 나) 청소년 대상 효행교육
 - 경기북부 10개 시군구 초·중학교 및 지역아동센터 25회 진행, 65.8% 달성
 - 청소년 대상 효행교육은 지역아동센터 수요처의 경우 여러 학교의 학급생이 모이는 곳으로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높으며, 체험형 교육프로그램으로 대상자에게 직접 체험복을 입혀주고 체험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으로 대상자와 밀접한 접촉이 있어 코로나 예방 수칙(참여자 간 2m 이상 간격 유지)을 준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방법들을 모색하여 진행함.
(*노인유사체험의 경우 동영상으로 대체, 노인학대예방 교육의 경우 강의와 게임 등 활용함.)
 - 2020년 청소년 대상 효행교육의 수요처 60% 이상 초·중학교로 섭외되었지만, 코로나 19로 진행될 수 없어 목표 실적을 달성할 수 없었음.

- **총평 및 제언**

효행교육 강사단 확보와 관할 지역 내 유관기관 담당자들의 협조로 수요처 발굴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음.

코로나19 확산이 지속화되면서 효행교육을 일시 중단되는 경우가 있었지만, 경기북부 10개 시·군의 방역수칙에 따라 지속적으로 수요처를 확보하여 진행함. 이에 계획(114회 3,500명) 대비 목표(81회 2,867명) 달성함.

효행교육 사업은 노인학대의 심각성 및 노인학대예방의 중요성을 교육할 수 있는 기회로 1차년도~3차년도 진행하면서 중복으로 지원하는 기관들의 수요가 많았으며, 목표 실적을 넘어서는 많은 요청이 들어오는 것으로 사업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보여짐.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의 일환으로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효과적인 접근 방식의 개발 차원에서 의미와 효과가 있었지만, 경기도 3년 사업으로 2020년으로 사업이 아쉽게 종료 됨. 차후 해당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바탕으로 노인보호전문기관 지속 사업으로 진행 필요

V. 진행사진



아동 효행교육 활동



청소년 효행교육 활동

『2020년 노인학대예방의 날 기념』 부천시 “노인인권 존중케어 경진대회” (수행기관: 경기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I. 사업명

『2020년 노인학대예방의 날 기념』 부천시 “노인인권 존중케어 경진대회”
(수행기관: 경기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II. 사업목적

- 부천시 장기요양기관의 노인인권 존중케어 우수사례 발굴·보급을 통해 인권기반의 요양서비스의 질 향상
- 노인인권 존중케어 제공 분위기 확산을 통해 입소노인이 존엄한 존재로 존중받고 인간다운 노후생활 보장으로 노인인권침해 및 학대 예방
- 지역사회중심에서 노인존중케어 실천을 위해 기관 간 협력체계 마련 및 노인인권보호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식 고취

III. 사업개요

- **주 관** 부천시·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 **후 원** 부천시 노인장기요양 시설협회
- **기 관** 2020. 5. 18.(월) ~ 2020. 6. 17(수)
- **대 상** 부천시 관내 노인장기요양기관(시설)
- **내 용** 발표사례 온라인 접수 후 심사를 통한 우수사례 선정 후 홈페이지 게시
코로나-19로 인하여 상장 및 상패 각 기관 우편발송
우수사례 선정기관 사례 발표를 통한 내용 공유(온라인)

* 경진대회 출품 주제

- 1) 신체 억제 사용 감소를 위한 실천 사례
- 2) 배뇨 훈련·운동을 통한 탈 기저귀의 실천 사례
- 3) 와상 노인 욕창 예방·관리를 위한 실천 사례
- 4) 와상 노인 탈 침대를 위한 실천 사례
- 5) 요양시설 내 냄새 발생 無의 실천 사례
- 6) 휴머니티드 혁명(보다, 말하다, 만지다, 서다) 실천 사례

IV. 성과 및 평가

- **사업성과**
 - 우수사례 내용 공유를 통하여 노인인권존중케어 실천 방법 이해 및 질 향상 평준화 선도
 - 생활시설 내 노인인권보호 감수성 향상을 통한 입소노인 삶의 질 향상 기여
 - 지역 내 노인인권존중케어 실천을 위하여 행정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 장기요양시설협회 등 관계기관들의 협력 활동의 폭이 넓어짐
 - 시설 내 올바른 노인학대 예방 활동 이해 및 인권보호 의식 제고
- **총평 및 제언**
 - 노인인권교육을 통한 이론적인 노인인식개선보다 직접적인 노인인권 존중케어 사례 공유를 통한 인식개선의 효과 창출
 - 경진대회를 통하여 기관 내 요양서비스 제공 방식이 노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방식이었는지 되돌아보는 계기 마련
 - 비슷한 환경적 요건을 가지고 있는 시설들의 사례 공유를 통하여 노인인권 존중케어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충분히 현재의 환경 속에서도 실천 할 수 있다는 긍정적 의식 변화 유도
 - 경기서부권역 중 부천시 내의 장기요양기관들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나, 추후 대상을 확대하여 더 많은 우수사례 발굴·보급을 통한 노인요양시설 공공성 강화 기대

V. 진행사진



경진대회 우수사례 선정기관

“인권감수성과 직장근무환경이 인간중심돌봄에 미치는 영향”조사연구 (수행기관: 경기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I. 사업명

“인권감수성과 직장근무환경이 인간중심돌봄에 미치는 영향”조사연구
(수행기관: 경기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II. 사업목적

- 인간중심돌봄 수준과 인권감수성 및 직장 근무환경 간의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여 노인요양시설 공공성 강화와 노인권익보호 및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

III. 사업개요

- 기 간 2020. 11. 10.(화) ~ 2020. 12. 18.(금)
- 대 상 경기서부권역 내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435명
- 내 용
 - 연구기관: 경기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 연구자: 이현주 관장
 - 조사방식: 경기서부권역(광명, 군포, 김포, 부천, 시흥, 안양시) 내 요양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우편을 통한 설문지 배포·회수
 - 분석방법: SPS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인권감수성, 조직문화, 인간중심돌봄의 수준 등을 기술통계 분석 사용
 - 연구모형: 일반적 특성, 직무요인, 조직문화요인, 인권감수성 등이 인간중심돌봄에 미치는 영향 연구

IV. 성과 및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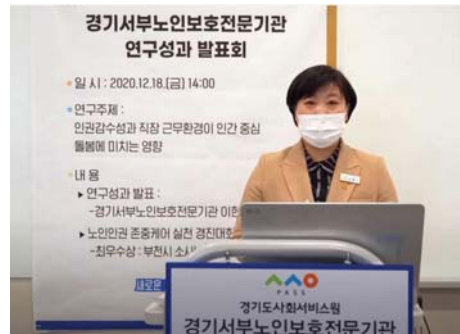
- 연구결과
 - 노인요양시설 종사자의 직무 스트레스(역할갈등, 역할과다)와 조직문화는 인간중심 돌봄에 영향을 미침
 - 종사자의 직종, 근무기관, 인권교육의 횟수에 따라 인권감수성과 돌봄 수준 평균에 차이가 있음

- **총평 및 제언**
 - 역할과다는 인간중심 돌봄서비스 제공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노인요양시설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전문적 인력을 확충하고 직원들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정부 정책마련 필요
 - 직종, 근무기관, 인권교육의 횡수에 따라 인권감수성과 돌봄 수준 평균에 차이가 있으므로 인하여 교육 대상자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 및 훈련 과정 지원 필요
 - 노인요양시설은 내·외부적 환경요인을 고려하여 각 시설 내 친인권적 조직 문화 형성을 통해 입소노인의 돌봄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력 필요

V. 진행사진



연구성과 발표회 생방송



유튜브 송출영상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이화순 원장 축사



연구성과 발표회

학대피해노인 가족의 역량강화를 위한 심리치료 프로그램 '인생 제2막_나를 꽃피우다' (수행기관: 경기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I. 사업명

학대피해노인 가족의 역량강화를 위한 심리치료 프로그램
'인생 제2막_나를 꽃피우다' (수행기관: 경기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II. 사업목적

- 학대피해노인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학대피해 충격 및 내적인 문제 완화를 통해 정서적 안정감과 긍정적 자아상을 도모

III. 사업개요

- 기 간 2020. 8. ~ 12.
- 대 상 학대피해노인 및 가족
- 내 용 회기성 심리치료프로그램

IV. 성과 및 평가

- 사업성과
 - 심리치료를 통한 갈등원인을 해소하여, 가족관계를 개선
 - 학대행위자의 내적 스트레스를 탐색하고, 학대피해노인과의 갈등상황을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자제력 향상
- 총평 및 제언
 - 재학대 예방 및 가족 관계 개선등의 긍정적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음
 - 지속적으로 재학대 발생이 지속되고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재학대 예방과 관계 개선을 도우며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정서적지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여 백

제V장

노인보호전문기관 사례집



학대피해노인과 학대행위자 모두의 안녕을 위해

사례 요약

1. 개요

피해노인	정OO(여, 72세)	학대행위자	김OO(남, 77세)	관계	법적 부부
개입기간	2020년 5월 ~ 2020년 9월(총 4개월)				
학대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신체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정서 <input type="checkbox"/> 성 <input type="checkbox"/> 경제 <input type="checkbox"/> 방임 <input type="checkbox"/> 자기방임 <input type="checkbox"/> 유기 (*중복)				

2. 요약

- 피해노인은 학대행위자의 외도를 의심하며 5년간 지속적인 부부싸움이 발생하였고 별거생활을 하는 중에도 학대행위자의 주거지를 방문하며 갈등상황이 반복됨.
- 피해노인과 학대행위자를 분리하고, 각각 경제적 지원과 정서적 지지 안전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유관기관을 연계하고 1차 종결됨.
- 사후관리 중 학대행위자의 재학대 및 폭력행동이 우려되어 재개입함.
- 서로 이혼의사가 있으나 먼저 말하기 거부하여 상담원이 법원동행, 이혼절차 진행함.
- 피해노인은 노인일자리에 참여, 외부활동과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음.
- 학대행위자는 기초생활수급권자 신청을 안내, 선정되어 경제적 어려움 해결됨.

I. 접수

• 접수상황

20년 4월부터 같이 거주하고 있었음. 신고 당일 학대행위자의 외도를 의심한 피해자가 학대행위자에게 새로 구매한 속옷을 주며 “이거 가지고 밖에 나가”라고 하는 말에 화가나 가위로 옷을 찢는 행위를 한 뒤 쓰레기통에 버리고 상호 말다툼이 발생함.

II. 상담 및 방문

- **진행** 2020. 8. ~ 12.

• 상담 및 학대내용 [피해자 상담]

- 학대행위자와 바람난 여성이 돈을 가지고 떠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 함께 거주했음.

- **상담 및 학대내용**
 - 이혼하고 싶지만 학대행위자가 재산분할(집)을 요구할 것 같아 이혼진행은 하지 않았고 학대행위자도 이혼하자는 이야기는 안한다고 함.
 - 거주하고 집은 본인 명의이며 주택연금, 노령연금을 받아 생활 중임.
 - 우울증으로 10여년 정신과 치료, 약복용 중임.
 - 수면제 먹고 자살 시도. 교회지인이 발견하여 병원이송, 위세척 후 퇴원함.

[학대행위자 상담]

- 피해자와 다툼 후 거주지 옮김(원룸). 주 수입은 노령연금 20만원, 국민연금 16만원, 예금 300만원이 있음.(고정지출로 월세 36만원, 관리비 약4만원)
- 타지에서 오래 생활했고, 현재 거주지에는 친구가 없어 외부활동은 자주 하지 않음. 피해자를 만난 지 10년정도 되었고 함께 살기로 한 후 당시 거주하던 집을 정리한 뒤 빌라를 구입, 명의는 피해자로 해주었음.
- 피해자가 외도를 의심하여 힘들었고 억울함. 다툼으로 집을 나왔을 때 피해자가 찾아와 사과하여 다시 결합했으나 이제는 집으로 들어갈 생각은 없음.
- 정기적인 수입을 확보하기 위해 노인일자리 참여를 권유하였으나 거부함.

III. 대상자 분석 및 서비스 개입

- **대상자별 강점과 약점**

대상	강점(욕구)	약점(위험)
학대피해 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혼. 단, 재산분할은 원치 않음. - 외부활동 적극적, 이웃교류 중 - 신체활동능력 우수 - 정기적인 수입 있음.(주택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울증, 불면증(약복용) - 학대행위자와 재혼, 집착 강함. - 자살시도(수면제 과다복용).
학대행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거 및 이혼 - 피해자의 연락, 주거지 방문 거부 - 신체활동능력이 우수함. - 정신과 약을 잘 복용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면증(약복용) - 외부활동을 하지 않음. - 본처와 자녀(2남 1녀)는 관계단절

- **개입 및 서비스연계**

목표	연계기관	진행된 서비스내용
피해노인, 학대행위자 안전 확보	경찰서	피해노인, 학대행위자 모니터링
피해노인 심신 안정	정신건강복지센터	피해노인 정신과 상담 및 투약 관리
학대행위자 경제적 지원	행정복지센터	학대행위자 긴급복지지원
피해노인 안부확인 학대행위자 경제적 지원 연결	종합사회복지관	피해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연계

IV. 종결

- **사 유** 거주지 분리,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로 안전체계 구축
- **변 화**
 - 학대피해노인: 심리적인 안정, 학대행위자에 대한 집착 감소
 - 학대행위자: 긴급복지지원으로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 해소(3개월)

V. 평가

-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피해노인과 학대행위자 각각 필요한 자원을 연계하여 심신의 안정을 찾았고, 긴급복지지원을 통해 일시적 경제적 어려움 해소됨.
- 서로 이혼을 원하지만 본인이 먼저 요청하기를 거부하였으며,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서 이혼을 진행하고 싶어 했으나, 당시에는 해결하지 못함.

VI. 사후관리

- **계획**
 - 3개월 내 모니터링 및 안부확인을 계획하였으나 학대행위자가 경찰관 모니터링 중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폭력적인 언어로 표현함. 위기에 몰리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힐 수 있어 경제적 지원방안을 모색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옴.
 - 피해노인과 학대행위자의 완전 분리로 상호 간 감정해소 및 위험요소 제거
 - 학대행위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경제적 지원 연계
- **사후관리 개입과정**
 - 학대행위자에 대한 긴급복지지원이 종료된 상태였음. 행정복지센터 주무관에서 서비스 연장을 요청하였고 3개월 연장됨.
 - 종합사회복지관에 사례관리 및 지원을 요청하였고 안부확인과 후원품 전달 등의 서비스 지원이 연계됨.
 - 피해노인과 학대행위자 모두 이혼의사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단 둘이 법원에 방문하는 것이 불편하다며 동행을 요청함.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 동행 하에 협의이혼을 진행함.
 - 피해노인이 이혼 후 심리적으로 불안할 수 있어 교회지인,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상황을 공유하고 주기적인 안부확인을 요청함.
- **결과**
 - 피해노인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종합복지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통해 주기적으로 안부 확인이 진행되고 있으며 노인일자리 참여자로 선정되어 외부활동을 하며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음.
 - 학대행위자는 이혼 후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하였으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일자리 참여에 대한 부분은 거부적임.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스스로 의식주를 해결하고 있어 추후 서비스 제공이 필요할 경우 행정복지센터에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함.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아들과 거주하며 매일 마음 졸이며 생활하는 어르신

사례 요약

1. 개요

피해노인	김OO(여, 73세)	학대행위자	김OO(남, 47세)	관계	모자
개입기간	2020년 1월 ~ 2020년 3월(총 3개월)				
학대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신체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정서 <input type="checkbox"/> 성 <input type="checkbox"/> 경제 <input type="checkbox"/> 방임 <input type="checkbox"/> 자기방임 <input type="checkbox"/> 유기 (*중복)				

2. 요약

- 학대행위자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지만 약복용과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고 지내며 피해자와 갈등상황이 생기면 난동과 행패를 부리는 행위를 반복함.
- 유관기관을 통해 피해자, 학대행위자 상담을 진행하며 개입하는 과정에서 학대행위자 방안에서 불이나 집이 전소하는 사건이 발생함.
- 피해자 가족, 행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경찰관이 협력하여 학대행위자의 병원입원과 수급권자 신청을 진행하며 사례를 종결함.

I. 접수

• 접수상황

학대행위자는 피해자에게 욕실 창문을 열어두라고 했지만 열려있지않아 이에 화가나 창문을 빼려고 하는 과정에서 창문이 바닥으로 떨어져 깨짐. 피해노인은 머리를 감다가 너무 추워 욕실 창문을 닫았는데 그걸 가지고 트집을 잡고 창문을 깨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에 신고함.

※ 2019년 12월에도 학대행위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로 귀가하여 집기를 던져지고 부시는 등의 행패를 부려 경찰서에서 본 기관으로 노인학대의심으로 통보됨.

II. 상담 및 방문

- **진행** 총 74회기

- **상담 및 학대내용** [피해노인 상담]
 - 자가에 거주하고 있으나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였고 난방비를 아끼기 위해 전기장판으로 생활하고 있었음.

• **상담 및 학대내용**

- 자녀들이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있는 상황이 아니고 노령연금 25만원으로 생활하고 있다고 함. 새마을금고에 2,300만원 빚이 있어 이자를 내고 있는 상황
- 학대행위자는 정신질환, 알코올 중독이 있으나 약을 복용하지 않아 술에 약을 몰래 타서 먹임. 최근 혼잣말을 하며 물건을 넣었다 뺐다하는 이상행동을 보임.
- 학대행위자의 약 복용과 입원치료를 원하였음.

[학대행위자 상담]

- 엄마가 깜빡깜빡하고 본인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만 할뿐 본인의 건강상태, 경제상태 등에 대한 이야기는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음.
- 웃긴 영상이라며 크림맥주를 만든 영상, 본인이 요리하는 사진, 직접 담군 김치를 꺼내어 보여줌. (방안에 식기도구 등 다양한 물건과 바닥에 그을린 흔적 있었음)
-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충격으로 엄마가 성당에만 다니고 자녀들을 케어 하지 않았다고 서운함을 이야기함. 다른 형제에 대해서도 비판적임.
- 주1회 방문하는 정신의학과 소견서 자료를 가지고 왔으며 경제적인 어려움을 직접 호소함. 정신적인 문제로 근로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지원을 받지 못하면 대리운전을 할 수 밖에 없으나 고객과 자주 다투 경찰에 신고가 빈번함.

[유관기관 개입 상담]

- 매주 1회씩 10월까지 나올 경우 장애 2등급 진단서를 발급해 줄 수 있다고 의사에게 확인함. 장애신청은 진단서 발급 후 가능하여 현재 신청이 어렵다고 함.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학대행위자가 조울증(양극성장애)으로 상태가 가장 최고조인 것 같다고 함. 치료의 필요성은 있지만 본인이 거부하고 있어 2인 동의하에 입원 또는 사건발생시 경찰관의 긴급입원 등의 방법 고민해야 한다고 함.
- 행정복지센터에서 경제적 지원방안을 모색한 결과 현재는 정부지원대상이 아니지만 거주지가 분리될 경우 학대행위자의 정신질환에 대한 장애등급을 신청하여 선정이 되면 40만원 정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함.

III. 대상자 분석 및 서비스 개입

• 대상자별 강점과 약점

대상	강점(욕구)	약점(위험)
학대피해 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 및 친척들과 관계가 좋음. - 외부활동이 자유롭고 신체 건강 - 학대행위자 약 복용 및 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대행위자를 안쓰러워하며 학대행위자에 대한 치료에 소극적임.
학대행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적인 지원 - 타인과 대화하는 것을 좋아함. - 피해자를 아끼며 챙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료, 약복용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며 치료에 거부적임

• 개입 및 서비스연계

목표	연계기관	진행된 서비스내용
피해노인, 학대행위자 안전 확보	경찰서	모니터링 및 학대행위자 행정입원 의뢰
학대행위자 상담 및 치료 설득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서비스 제공
피해노인, 학대행위자 경제적 지원	행정부지센터	경제적 지원(수급권자 신청)

• 개입 중 상황변화

- 피해노인 생일에 가족들과 식사를 위해 외출한 날 학대행위자가 방에서 사용하는 전기난로를 끄지 않아 불이 나 집이 전소하였음.
- 행정복지센터 긴급회의 진행(피해자와 가족, 주무관, 경찰관). 보호자 동의하에 학대행위자 입원을 진행하려 하였으나 과거 보호자동의 입원 후 학대행위자에게 협박문자를 받았던 경험이 있어 가족들은 보복을 두려워함. 경찰관 판단하에 응급입원으로 진행함(신고이력, 상담 내용 등을 바탕으로 치료가 필요한 상황)
- 피해자는 큰아들집이나 친척집에서 당분간 생활하기로 하고 피해자 거주지 마련, 학대행위자 수급신청 관련 서류제출은 피해자 큰아들이 진행하기로 함.

IV. 종결

- **사 유** 학대행위자 병원 입원
- **변 화**
 - 학대피해노인: 학대행위자와 분리되었으며 심리적 안정감을 찾으나 퇴원 요구로 마음이 힘든 점이 있었음.
 - 학대행위자: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음.
 - 가족: 장남이 피해노인과 학대행위자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와 지원을 돕고 있음.

V. 평가

- 학대행위자가 긴급입원 되면서 병원에서 적절한 치료와 약복용을 하고 있으며 피해노인 장남이 피해노인과 학대행위자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와 지원을 하고 있어 향후 학대 재발 위험성이 적음.
-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노인보호전문기관, 경찰, 유관기관, 가족이 모두 적극적인 대응과 협의를 통해 피해노인과 학대행위자가 분리 및 각자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었음.

VI. 사후관리

- **계획**
 - 3개월 내 2회 이상의 모니터링 실시
- **결과**
 - 학대행위자는 3개월 정도 입원치료를 받았고 의사 진단하에 퇴원함.
 - 상태가 호전되었으며 정신과 약은 잘 복용하고 있어 큰 문제는 없다고 함.
 - 장남이 학대행위자가 거주할 월세를 구해주었고 수급자 신청도 했다고 함.

배우자로부터 학대를 당하고 갈 곳이 없는 어르신

사례 요약

1. 개요

피해노인	이00(여, 78)	학대행위자	김00(남, 77세)	관계	부부
개입기간	2020년 11월 ~ 2021년 2월(총 3개월)				
학대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신체 <input type="checkbox"/> 정서 <input type="checkbox"/> 성 <input type="checkbox"/> 경제 <input type="checkbox"/> 방임 <input type="checkbox"/> 자기방임 <input type="checkbox"/> 유기 (*중복)				

2. 요약

- 경찰서에서 통보되었으며, 피해노인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아 경찰이 제공하는 임시숙소에서 계시다가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에 입소함.
- 가정법률상담소 협조로 학대행위자와의 이혼을 진행함.
- 쉼터 퇴소이후 거주지와 경제적 자립을 위해 LH 임대아파트 신청, 국민기초생활수급권 신청, 생활 물품 등을 지원함.
- 학대피해노인은 집을 계약하며 쉼터 퇴소를 진행하였고, 자립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자녀들의 지원을 약속받았다고 하며, 학대피해노인과 학대행위자가 분리되었으므로 안전이 확보되었다고 판단하여 사례를 종결하며 사후관리 상담을 실시함.

I. 접수

• 접수상황

00경찰서 통보서를 통해 접수되었으며, 최초신고는 피해노인 본인이 직접 하였다고 함. 피해노인의 안전확보를 위해 경찰이 임시숙소를 제공하였다는 내용을 확인함.

II. 상담 및 방문

• 진 행 총 18회기

- 상담 및 학대내용
 - 피해노인은 경찰서에서 제공한 임시숙소에서 자녀의 집으로 피신을 한 상황이며, 피해노인은 슬하에 1남 4녀의 자녀가 있으나 자녀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함.
 - 학대피해노인은 약 40년 전부터 학대행위자가 술을 자주 마셨다고 진술하며, 술을 먹은 날마다 본인을 폭행하거나 괴롭히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고 함. 젊어서는 이혼을 하고 싶었지만 자녀들 때문에 이혼을 하지 못하였고,

- **상담 및 학대내용**
 - 현재는 이혼 욕구가 있음을 표현함.
 - 학대피해노인은 재산관리를 학대행위자가 하여 이혼을 하더라도 거주지를 마련할 수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며, 가정법률상담소 연계 및 협조를 통해 재산권에 대한 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함.
 - 학대피해노인은 천식을 앓고 있으며, 인지능력이나 의사소통은 무리가 없음. 다만 2년 전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허리가 좋지 않으며, 거동이 제한적인 부분을 확인함.
 - 학대피해노인은 학대행위자가 과거부터 재산을 아들에게만 주는 등의 행동으로 인해 아들을 제외한 타 자녀들과의 관계가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하며, 대부분의 자녀들이 이혼을 권유하였다고 함.
 - 피해노인은 자녀의 집에서 오래 머물기 힘든 상황으로 인해 쉼터 입소를 진행하였으며, 쉼터 입소 이후 입소확인서를 주민센터에 제출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권 신청과 거주지 마련을 진행하였으며 쉼터 퇴소 이후 피해노인이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진행함.

III. 대상자 분석 및 서비스 개입

• 대상자별 강점과 약점

대상	강점(욕구)	약점(위험)
학대피해노인	- 안전한 거주지 마련, 독립을 통한 경제적 자립에 대한 강한 욕구	- 경제적 자립, 이혼, 거주지 마련에 대한 심리적 불안정
학대행위자	- 아들과의 관계형성을 통한 일상생활 유지	- 자녀들의 갈등으로 인한 부양의지 약화
주변인 (가족, 지인)	- 학대피해노인 이혼, 독립 등 전폭적인 지원	-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직접부양의 한계

• 개입 및 서비스연계

목표	연계기관	서비스내용
쉼터입소를 통한 학대피해노인 안전확보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심리치료프로그램을 진행하여 학대피해노인 정서적 안정 강화
학대피해노인 정서적안정 및 지지자원 강화	관할 행정기관	LH 신청을 통한 주거지확보, 국민기초생활수급권 신청
쉼터퇴소 이후 학대피해노인 거주지 마련	가정법률상담소	가정법률상담소 연계를 통한 이혼절차 진행

IV. 종결

- **사 유** 학대피해노인 거주지확보로 인한 쉼터 퇴소를 진행하였으며 학대행위자 분리를 통해 재학대 위험요인이 소거되었다고 판단됨.
- **변 화**
 - 학대피해노인: 분리를 통한 재학대 발생 요인 소거, 경제적 독립
 - 학대행위자: 아들과의 관계 형성을 통한 일상생활 유지
 - 주변인: 학대요인 소거로 인한 자녀들의 갈등 해소 및 부양 의지 강화

V. 평가

- 피해노인의 확실한 욕구와 자녀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쉼터 입소부터 거주지 마련 등에 대한 계획이 피해노인의 욕구에 맞추어 진행되었다고 평가됨.
- 피해노인 자녀와의 소통을 통해 계획 및 진행에 대한 흐름이 원활하였으며, 지속적인 정서적 지지를 통해 피해노인이 빠르게 안정감을 취할 수 있었다고 평가됨.
- 개입 당시 제도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나 쉼터 입소 이후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도움을 통해 질 높은 개입을 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며, 연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인지하는 계기가 되었음.

VI. 사후관리

- **계획**
 - 학대피해노인과 학대행위자의 접촉 여부 및 재학대 여부 확인
 - 이혼소송을 통한 학대피해노인 경제적 자립에 대한 여부 확인
- **결과**
 - 등초본 교부 제한을 통해 피해노인 거주지 위치가 노출되지 않았음을 확인
 - 이혼소송을 진행하며 부족한 비용은 자녀들이 부담하는 것을 확인

혼자 살게 해주세요

사례 요약

1. 개요

피해노인	이00(남, 77)	학대행위자	서00(여, 74)	관계	배우자
개입기간	2020년 08월 ~ 2020년 12월(총 5개월)				
학대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신체 <input type="checkbox"/> 정서 <input type="checkbox"/> 성 <input type="checkbox"/> 경제 <input type="checkbox"/> 방임 <input type="checkbox"/> 자기방임 <input type="checkbox"/> 유기 (*중복)				

2. 요약

- 평소 집에서 식사를 하기 어려운 학대피해노인이 복지관 경로식당을 이용하는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인해 경로식당 이용이 중단됨. 피해노인 가정으로 도시락이 제공되었으나 학대행위자에 의해 음식물 섭취가 제한되었다고 함. 이에 피해노인이 직접 재가노인복지센터 및 사회복지관에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여 신고 접수됨. 신고 당시, 피해노인의 건강상태를 우려한 사회복지관 직원에 의해 응급입원 조치가 되었으며, 원가정 복귀를 하지 않고 혼자 살고 싶다는 욕구를 파악함.
- 피해노인의 사례개입을 위해 노인보호전문기관,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관, LH 관련종사자가 모여 통합사례회의를 진행하였으며 피해노인의 의료비를 지원 및 기초생활수급비 분리, 퇴원 이후 거취 등을 논의함.
- 자녀상담을 통하여 피해노인 생활시설 입소 진행을 요청하였으며, 학대행위자 상담을 통해 피해노인의 현재 상태와 이후 거취에 대한 안내를 진행함.
- 입원치료를 통해 건강을 회복한 피해 노인은 행정복지센터에 의해 노인생활시설에 입소하였으며, 입소 후 시설에 적응을 잘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사례 종결함.

I. 접수 (접수판정 : 비응급 / 신체적학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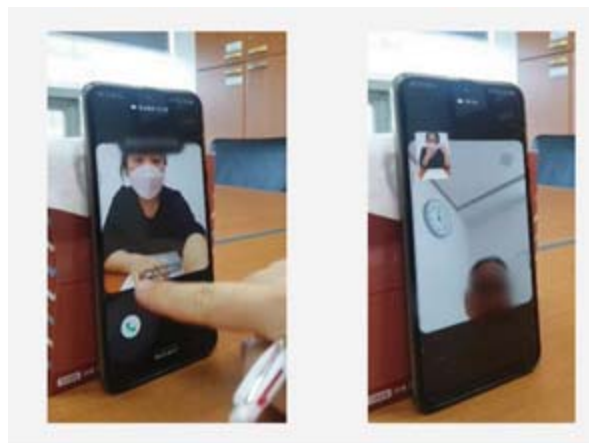
• 접수상황

- 피해노인과 학대행위자는 기초생활수급자로 LH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중임.
- 학대행위자가 평소 집안에서 피해노인이 음식을 섭취하는 것을 매우 싫어하였음.
- 피해노인이 하루 한 끼(점심)을 사회복지관 경로식당에서 드셨으나 코로나19로 운영을 하지 않게 됨. 이후 도시락으로 식사제공 방법을 변경하여 피해노인에게 제공하였음에도 학대행위자가 도시락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등 피해노인이 식사를 하지 못하게 방해하였음.
- 방문요양보호사(학대행위자에게 판견된 방문요양보호사)가 피해노인에게 음식을 챙겨주려고 하였으나 학대행위자가 매우 강하게 금지시켰다고 함.

- 상황이 지속되자 피해노인의 건강이 악화되었고, 생명의 위협을 느낀 피해노인이 집을 나와 재가장기요양기관과 사회복지관에 도움을 요청하여 신고접수됨.
- 복지관 사회복지사가 피해노인이 위급하다 판단하여 요양병원으로 긴급입원시킴.
- 피해노인은 입원 당시 미음도 먹을 수 없었으며 두 사람이 부축을 해야 걸을 수 있는 상태였다고 함. 가족들이 피해노인의 실종신고를 할 경우를 대비하여 경찰 측에 본 사건과 관련한 내용을 공유함.

II. 상담 및 방문

- **진행** 총 57회기
- **상담 및 학대내용** **[현장조사]**
 - 긴급입원 된 피해노인의 현장조사를 위해 면회를 요청하였으나, 코로나19 대응단계가 상향되어 면회가 불가하였음. 이에 병원 관계자에게 협조 요청하여 영상통화로 피해노인 상담을 진행함.
 - **건강상태** : 영양실조로 인해 악화되었던 건강상태는 회복 중이며, 다른 기저질환은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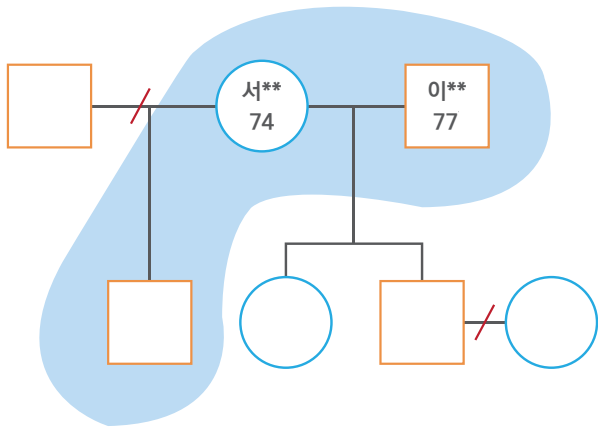
[사진] 현장조사를 위한 영상통화

- **경제상태** : 피해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생활수급비, 노령연금 등 피해노인의 자산을 학대행위자가 관리하여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자산이 없음.
- **주거상태** : 피해노인이 세대주인 임대아파트에서 학대행위자, 아들과 동거 중임.
- **피해노인 욕구** : 집에 돌아가도 예전처럼 식사를 못하게 할 것을 우려하여 복귀 의사가 없었으며, 병원 퇴원 후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살고 싶다고 요청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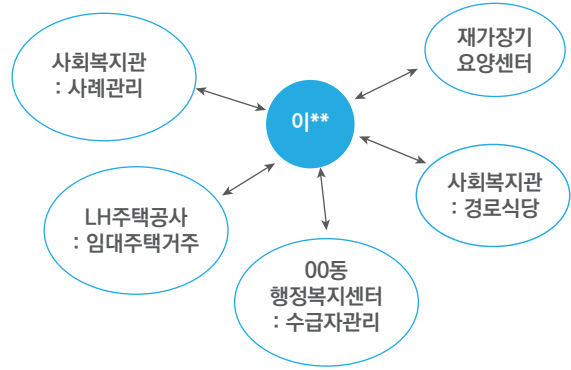
• 상담 및 학대내용

[사 정]

- 학대피해내용 : 신체적 학대
- 학대피해노인 가족력 및 특수상황
 - 1) 피해노인과 학대행위자는 부부관계로 슬하에 2남 1녀가 있으며, 동거중인 1남은 학대행위자의 혼외자로 정신지체장애가 있음.
 - 2) 학대행위자는 시각장애가 있으며, 다양한 민원을 제기하는 성향이 있다고 함.
 - 3) 피해노인은 친자녀와 관계가 좋지 않아 피해노인의 부양을 거절하며, 학대행위자와의 마찰을 두려워한다고 함.



[그림] 가계도



[그림] 생태도

III. 대상자 분석 및 서비스 개입

• 대상자별 강점과 약점

대상	강점(욕구)	약점(위험)
학대피해 노인	- 원가정 복귀 거부 - 경제권 분리 원함.	- 소득을 학대행위자가 관리함. - 가족과 애착관계 없음.
학대행위자	- 과거 피해노인의 가정소홀과 폭력으로 고통 받음. 피해노인을 위한 도움을 주지 않았으면 함.	- 시각장애가 있음. - 다양한 기관에 지속적 민원 제기 - 경제권 분리 거부
주변인 (가족, 지인)	- 피해노인에게 지원할 지역자원이 많음. (사회복지관, 행정복지센터등)	- 가정에 소홀히 하여 자녀와 관계가 좋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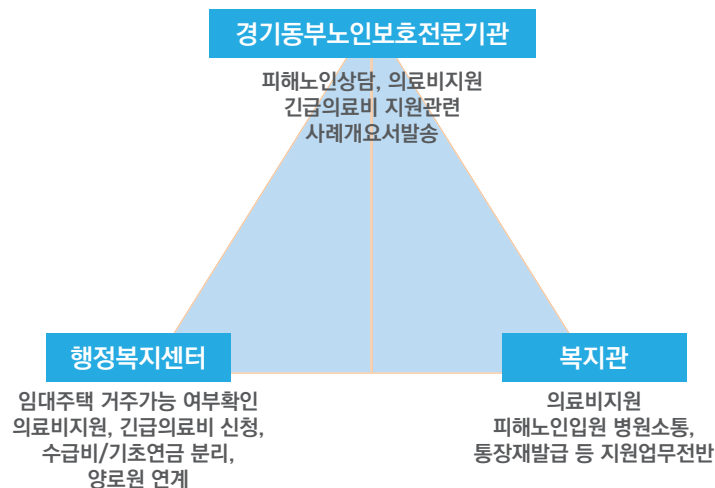
• 개입 및 서비스연계

목표	연계기관	서비스내용
건강 회복지원 : 피해노인 치료 및 건강회복	1. 행정복지센터 2. 사회복지관 3. 요양병원	- 기관별 의료비지원 - 건강상태 모니터링 - 생활시설 입소를 위한 코로나검사 진행
경제권 분리 지원 : 피해노인 기초생활수급비 분리 및 노령연금 계좌변경	1. 행정복지센터 2. 사회복지관	- 학대행위자에게 통합 지급된 기초생활 수급비를 개인으로 지급되도록 분리신청 - 기초노령연금 수령을 위한 통장재발급 및 계좌변경 진행
거주지 분리지원 : 피해노인 생활시설입소	1. 행정복지센터 2. 사회복지관 3. LH관리사무소	- 피해노인이 입소할 생활시설 섭외 - 생활시설 입소를 위한 자녀 및 학대행위자 상담, 피해노인 입소동행 - 동거가족 임대아파트 거주가능여부 논의

• 개입과정

- 통합사례회의 개최

- 1) 사례개입을 위해 통합사례회의 제안, 총 2회 연계기관과 개입방향 및 과정협의
- 2) 1차 통합사례회의 : 각 기관의 개입방향 설정
- 3) 2차 통합사례회의 : 개입과정 협의 및 사례종결방안 논의



[그림] 통합사례회의에서 논의된 사례개입을 위한 기관별 역할

- 피해노인의 건강 회복지원

피해노인 건강모니터링을 위한 요양병원 간호과 상담을 지속적으로 진행함. 요양병원 내 사회공헌사업을 통해 의료비 일부를 감면받았으며, 감면된 의료비를 노인보호전문기관, 사회복지관, 행정복지센터가 분할 납부

- 피해노인의 경제권 분리 지원

피해노인의 경제권을 분리하기 위하여 통장 재발급 등을 사회복지관에서 피해노인 동행함. 이후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행위자 및 자녀상담을 통해 지급계좌 분리 상황을 안내하였음.

- 피해노인의 거주지 분리지원

- 1)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입소를 희망하나 장기요양등급이 없어 요양원입소가 불가능한 상황이며, 임의적으로 거주지를 옮길 경우 피해노인의 가족(학대행위자 및 자녀)이 임대주택에서 강제퇴거가 될 것을 우려하여 LH와 사전 논의 후 피해노인 거주지 분리방향을 설정하기로 하였음.
- 2) 시설 입소 시 가족 구성원들이 현재 거주지에서 퇴거 조치되지 않는 것을 안내하고 상담을 통해 시설 입소에 대한 의사를 재확인함. 행정복지센터에서 피해노인이 입소할 양로시설을 섭외함.
- 3) 입소 일정 확정 후, 각 연계기관과 절차와 필요사항에 대하여 논의함. 입소전, 입소 당일 보호자 상담이 필요하여 자녀 설득을 통해 피해노인을 입소시킴.

IV. 종결

- **사 유** 학대 피해노인 분리 (시설입소)
- **변 화**
 - 학대피해노인 : 시설입소를 통하여 안전한 거주지 마련 및 학대상황 소멸
 - 학대행위자: 피해노인 시설입소 후에도 임대주택에서 자녀와 함께 거주 중

V. 평가

지역사회 유관기관들의 연계를 통하여 피해노인 건강회복을 위한 의료비지원, 경제권분리 및 거주지 분리 등 학대상황을 개선 할 수 있었음. 본 사례와 같이 노인보호전문기관 역할만으로 서비스 지원이 어려운 경우, 지역사회의 유관기관 연계가 중요하다고 사료됨.

VI. 사후관리

- **계획**
 - 피해노인 양로시설 입소 후 적응 여부 확인
- **결과**
 - 피해노인 입소 후 양로시설에서 적응을 잘하고 있음을 확인

불안·우울을 지역통합 돌봄서비스로 이겨내다

사례 요약

1. 개요

피해노인	000(여, 80)	학대행위자	000(남, 44)	관계	자녀
개입기간	2019년 10월 ~ 2020년 8월(총 11개월)				
학대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신체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정서 <input type="checkbox"/> 성 <input type="checkbox"/> 경제 <input type="checkbox"/> 방임 <input type="checkbox"/> 자기방임 <input type="checkbox"/> 유기 (*중복)				

2. 요약

- 학대피해노인은 학대행위자 아들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한 후 경찰서로 접수된 사례
- 학대행위자는 알코올 섭취 시 상습적으로 폭언, 물품 손괴했으며 6개월 수감됨.
- 피해노인은 정서적 불안과 우울증을 경험하였으며, 신경과 약, 수면제를 복용하는 심각한 수준이었음. 지역사회 연계된 자원이 없었으며, 학대행위자 교도소 출소 시 재학대의 위험이 있었음.
- 가정 내 재학대 예방을 위한 라이프케어 서포터즈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상담을 통해 학대 상황 시 대처방안을 습득하고 불안 및 스트레스가 감소됨.
- 지역사회 유관기관의 개입을 통해 안전망이 구축되었으며 재학대 위험이 감소함.

I. 접수

- **접수판정** : 비응급
- **접수상황** : 학대행위자 아들이 누워있던 피해노인을 아무 이유 없이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폭행하여 112 신고접수 됨. 학대행위자는 술을 마시고 폭행을 하였다며 현재 피해노인은 딸의 집으로 이동 중에 있다고 함.

II. 상담 및 방문

- **진행** 총 52회기
- **상담 및 학대내용** **[피해노인 상담]**
 - 학대행위자(아들)은 알코올 섭취 후 신체적 폭행이 이루어졌으며, 피해노인은 경제적 사유로 인해 양로시설 입소에 어려움.
 - 학대행위자에 대한 알코올 중독 치료 욕구를 표출함.
 - 원가정으로 복귀한 뒤 명절선물 전달을 위해 방문했을 때 재학대 상황 확인됨
 - 학대상황으로부터 스스로 대처하고, 긍정적 변화를 찾아나갈 수 있도록 지지함.

- **상담 및 학대내용** [학대행위자 상담]
 - 본 사건으로 구속되어 상담을 진행하지 못함

[사업 참여 및 통합 사례관리]

- 지속적으로 재학대가 발생하는 상황, 학대행위자의 처벌에 대한 두려움과 교도소 출소날짜가 정해지면서 겪는 불안과 우울 등을 고려하여, 노인학대 가정재학대 예방사업을 추천하였음.
- 스스로 강점과 약점을 돌아보고, 학대행위자에 대한 양가감정(안쓰러움/원망)과 혼란스러운 감정을 정리하고 삶의 방향에 대해 전문상담사와 11회 연계

III. 대상자 분석 및 서비스 개입

- 대상자별 강점과 약점

대상	강점(욕구)	약점(위험)
학대피해 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지상태가 양호하며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없음 - 딸과 사위, 손 자녀와의 관계가 원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 및 현재 자살시도, 사고有 - 지역사회복지서비스 개입 無 - 학대행위자에 대한 양가감정과 내적 갈등(미안/원망/안정/불안)
학대행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속되어 상담 진행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알코올 사용 장애, 폭력적 주사 - 당뇨, 간경화
주변인 (가족,지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노인에 돌봄에 적극적인 딸 	

- 개입 및 서비스연계

통합사례회의를 통해 내담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지역 내 자원을 모으고, 서비스 제공의 중복 및 파편을 예방하는 통합사례개입을 도모함서비스 도모 지역사회 내 지속적인 개입을 도모함.

목표	연계기관	서비스내용
피해노인 가정 내 재학대 위험요인 감소	노인복지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부확인 및 정서지원 - 후원물품 지원 등의 사례관리
	경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 모니터링, 재학대 방지
	행정복지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푸드뱅크 서비스 제공
	자살예방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안·우울 등의 지표검사 - 자살예방상담 등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노인 개별상담

IV. 종결

- **사 유** 지역 사회 내 유관 기관 개입이 이루어져 안전망 구축, 학대 상황 시 대처방안 습득, 불안 및 스트레스의 감소가 확인 되어 사례 종결
- **변 화**
 - 학대피해노인: 피해노인의 욕구 사정을 통해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건강가정지원센터, 행정복지센터 등 다양한 지역자원을 연계하여 지역사회 보호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심리적 안정감을 회복함.
 - 학대행위자: 출소 이후 지속적인 모니터링 결과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지 않음.

V. 평가

- 피해노인에게 정서안정프로그램(전문상담사 연계)과 지역사회 다양한 자원과 기관을 맞춤형 서비스로 연계하여 심리·정서적 안정과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함.
- 학대피해노인이 지역사회 기관들로부터 보호 받고 있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음.

VI. 사후관리

- **계획**
 - 추적 조사를 통해 학대피해가정의 안부 확인
- **결과**
 - 피해노인은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며 현재 생활에 만족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어 지역보호체계 안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함.

가족 간 신뢰 · 믿음 회복으로, 마음 속 바람이 현실로

사례 요약

1. 개요

피해노인	000(여, 74)	학대행위자	000(남, 77)	관계	배우자
개입기간	2020년 2월 ~ 2020년 10월(총 9개월)				
학대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신체 <input type="checkbox"/> 정서 <input type="checkbox"/> 성 <input type="checkbox"/> 경제 <input type="checkbox"/> 방임 <input type="checkbox"/> 자기방임 <input type="checkbox"/> 유기				

2. 요약

- 배우자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한 후 경찰서로부터 접수된 사례
- 학대행위자는 피해노인의 목살을 잡고 흔드는 등의 신체적 학대 정황이 있었고 과거 가정 폭력 신고 이력이 3회 이상 있었음.
- 지속적인 신체적 학대로 정서적 불안과 우울증을 경험, 신체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음. 또한, 학대피해노인은 분리에 대한 욕구가 없었음.
- 가정 내 재학대 예방을 위한 라이프케어 서포터즈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상담을 통해 학대 상황 시 대처방안을 습득하고 불안 및 스트레스가 감소됨.
- 지역사회 유관기관의 개입을 통해 안전망이 구축되었으며 재학대 위험이 감소함.

I. 접수

- **접수판정** : 잠재적
- **접수상황** : 아버지가 어머니를 폭행하고 있다며 아들이 112에 신고하여 경찰서 통보를 통해 본 기관에 접수되었음. 학대행위자와 아들간의 핸드폰 요금문제로 다툼이 발생하면서, 피해노인이 이에 개입하자 서로 몸싸움을 하게 되었음. 또한, 해당 가정은 과거 3회 이상 신고 이력이 있음을 확인함.

II. 상담 및 방문

- **진행** 총 62회기
- **상담 및 학대내용** **[피해노인 상담]**
 - 과거 3회 이상의 신고이력이 확인되었고, 이전에도 자주 다툼이 있었으나 학대행위자(배우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 갈등 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것은 학대행위자의 욕설과 폭언 때문이며, 다정하게 해줄 것을 원하고 건강이 좋지 않은 본인을 챙겨주기를 원함.

- **상담 및 학대내용**
 - 뇌경색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 3년 전 유방 절제 수술로 신체적 어려움이 있음.
 - 남편과 시동생, 시아버지에게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고, 장애아들과 생활 하면서 겪는 스트레스로 인해 생활에 대한 부담이 있음.
 - 가족관계 개선, 주거환경 개선 서비스의 욕구를 표출함.

[학대행위자 상담]

- 누나들의 사망으로 인해 상실감을 발견, 노인일자리 참여에 대한 욕구를 표출

[피해노인 자녀]

- 경제적인 어려움과 동시에 일자리에 대한 욕구 발견
- 지적장애 3급으로 장애인복지관 사례관리 대상자로 연계 의뢰 발송

[사업 참여 및 통합 사례관리]

- 노인학대 가정재학대 예방사업 추천
- 부정적 정서 다루기, 가족 구성원 간 신뢰 관계 만들기, 부정적인 피드백 줄이기 등의 상담 목표 수립
- 가정 내 악순환 반복, 말투에서 서로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있음을 인식시킴.
- 타임아웃 방법을 활용하여 부정적 감정이 강화되면 대화중단 및 장소분리 안내

III. 대상자 분석 및 서비스 개입

- 대상자별 강점과 약점

대상	강점(욕구)	약점(위험)
학대피해 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리정서적 안정 - 학대행위자 폭력적 성향 감소 - 식료품 및 생필품 지원 - 복지서비스에 대해 협조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상태악화로 인한 일상생활의 어려움(장기입원 후 퇴원) - 부부 간 의사소통 문제
학대행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관계 개선 -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부간 의사소통 문제
주변인 (가족,지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관계개선(아들) - 경제적 자립(일자리 사업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인지체장애가 있으며 사회 대인관계에 어려움 모습을 나타냄

• 개입 및 서비스연계

목표	연계기관	서비스내용
대상자 가정 재학대 위험요인 감소	노인복지관	-학대행위자 일자리 연계
	장애인복지관	-아들의 일자리 연계 및 사례관리
	사회복지법인00	-주거환경개선사업 연계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자 모집 및 환경개선사업

IV. 종결

- 사 유** 학대행위자 상황개선(상황개선 지지자원 강화)
 - 피해노인을 대상으로 직접 서비스 연계를 수행하지는 못하였으나, 가족구성원인 학대행위자, 자녀의 일자리 사업 및 사례관리 참여를 연계함.
 - 학대행위자가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면서 활력을 찾고, 경제적인 여유가 생김
 - 지역사회 연계로 지역 내 지지체계가 강화되어 재학대 위험요인이 감소됨.
- 변 화**
 - 학대피해노인: 불안 및 우울성향이 감소하였고 자아존중감 사전·사후검사결과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음. (재학대위험요인조사 사전·사후 19점 감소, 학대 피해노인 우울 조사 결과 3점 감소)
 - 아울러 정서안정프로그램 및 맞춤형서비스 연계를 통해 심리 정서적 안정과 지역사회 내 장기적인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함.
 - 학대행위자: 다양한 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해 지지자원의 강화로 재학대의 요인이 감소하였으며, 전문 상담 개입을 통해 가족 내 잘못된 언어적 표현에 대해 인지하게 됨.
 - 가정환경: 피해노인의 욕구를 수렴하여 도배·장판, 수납공간에 대한 주거환경개선 서비스를 진행함. 또한, 자원봉사를 연계하여 피해노인의 동의를 얻어 필요하지 않은 물품을 버리고 정리함.

V. 평가

- 라이프케어 서포터즈 지원사업의 정서안정프로그램(전문상담연계)과 맞춤형 서비스 연계를 통해 심리·정서적 안정과 지역사회 내에서 장기적인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함.

VI. 사후관리

- 계획** 학대피해노인의 안부확인 및 재학대발생 예방을 위해 3회기 이상의 모니터링
- 결과**
 -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사후관리(모니터링) 결과 현재 생활에 만족감을 보임.
 - 재학대 발생하지 않았으며 학대행위자의 태도가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됨.

시설 종사자의 치매노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인한 시설학대 사례

사례 요약

1. 개요

피해노인	이00(여, 85)	학대행위자	김00(여, 50)	관계	시설종사자
개입기간	2020년 3월 ~ 2020년 5월(총 3개월)				
학대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신체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정서 <input type="checkbox"/> 성 <input type="checkbox"/> 경제 <input type="checkbox"/> 방임 <input type="checkbox"/> 자기방임 <input type="checkbox"/> 유기 (*중복)				

2. 요약

-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해있는 노인이 신체적, 정서적 학대로 신고접수 됨.
- 현장조사 및 관할 지자체와 합동 조사 결과 시설종사자가 학대피해노인의 머리를 손으로 두 대 때리고 머리채를 움켜잡거나 잡아당겼다는 행위 및 휠체어를 발로 찼다는 사실에 대해 상흔 및 진술과 기록을 통해 확인함.
- 학대피해노인에게 반말, 누명을 씌우고 수시로 고함을 지른 사실 동료 노인 진술과 과거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공통된 학대 사항임을 확인함.
- 사례판정위원회를 실시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업무수행지침 및 관련법(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신체적, 정서적 학대로 판정 후 경찰 수사에 협조함.
- 피해노인은 타 시설로 전원조치 되면서 안정을 찾았고, 학대행위자는 적법한 조치를 받았음. 또한 보호자가 갖게 된 분노와 억울함, 불안감을 완화하기 위해 지지상담을 진행한 뒤 사례를 종결함.
- 노인학대 및 치매노인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노인인권침해 및 학대가 발생할 수 있는 점과 시설학대의 심각성이 드러난 사례였음.

1. 접수

- **접수상황** : 피해노인이 노인복지시설 내에서 치매 특성상 수집증을 가지고 있었으나 학대행위자(시설종사자)가 이를 문제행동으로 인식하여 초콜릿을 가져갔다는 이유로 “도둑년, 내 것 다 훔쳐 간 년”이라고 한 후 머리를 두 대 내리치며 뒷머리를 움켜쥔 채 뒤로 잡아당겼다고 함. 또한, 배회하거나 리모컨을 가져갔다는 이유로 학대피해노인이 앉고 있는 휠체어를 발로 차 학대피해노인의 온몸에 멍이 생겼다고 함.

II. 상담 및 방문

- **진행** 총 27회기
- **상담 및 학대내용**
 - 학대행위자가 학대피해노인에게 반말을 하거나 “도둑년, 내 것 다 훔쳐 간 년”이라 하며 머리를 두 대 때리고 뒷 머리채를 움켜잡거나 잡아당긴 사실에 대해 목격자의 일기자료와 진술, 이전 시설종사자 및 동료 노인과 학대피해노인의 진술이 일부 일치함.
 - 학대행위자가 학대피해노인이 타고 있는 휠체어를 발로 차 학대피해노인의 온몸에 멍이 생겼다는 사실에 대해 시설종사자의 진술과 학대피해노인의 진술이 일부 일치하며 상해진단서 및 상흔 사진 자료를 통해 신체 피해 상황을 확인함.

III. 대상자 분석 및 서비스 개입

• 대상자별 강점과 약점

대상	강점(욕구)	약점(위험)
학대피해노인	- 치매가 있으나 의사표현이 가능하며 학대피해사실에 대해 일부 진술이 가능함.	- 거동이 불편하여 자기보호능력이 취약함.
학대행위자	- 조사에 협조적임.	- 학대피해노인의 치매특성을 문제행동으로 인식하는 등 노인인권의식이 낮음.
주변인 (가족,지인)	- 학대피해노인을 보호하려는 의지가 강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함.	- 사법적 처리 및 소송 등 개인적 시간이 취약함.

• 개입 및 서비스연계

목표	연계기관	진행된 서비스내용
노인복지시설에서 발생하는 노인인권침해에 대한 심각성 고취	관할 행정기관	학대사례결과 및 근거자료 등을 관할지자체에 보고함.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권리 옹호	관할 사법기관	수사협조 및 자료제출
전문적 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종사자의 인권 의식 배양 도모	시설 및 지자체	노인인권교육 및 학대예방교육 실시함.

IV. 종결

- **사 유** 노인복지시설 내 시설종사자에 의한 인권침해 및 학대 건에 대해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수행지침과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근거로 개입, 해당 시설장과 학대행위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내려짐.
- **변 화**
 - 학대피해노인: 타 시설로 전원조치 되어 안전이 확보됨.
 - 학대행위자: 노인학대 판정 및 심각성에 대해 권고, 적절한 조치를 받음.
 - 주변인: 보호자와 지속적으로 상담하여 학대피해노인이 당한 분노 및 억울함과 불안감을 완화하기 위해 지지상담 진행 후 도움이 필요시 추가 개입이 가능함을 알리며 노인인권 구제기관인 노인보호전문기관에 대해 설명하여 안정을 찾도록 함.

V. 평가

- 시설에서는 치매가 있는 노인의 도벽 및 배회 등을 치매로 인한 자연스러운 증세라고 생각하지 않고 문제행동으로 인식하여 학대피해노인을 부적절한 방법으로 억압하였지만 그러한 억압이 학대라고 생각하지 않음. 이번 사건을 계기로 노인학대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개선함.

VI. 사후관리

- **계획**
 - 학대피해노인의 안부확인 및 재학대 발생 예방을 위한 월 1회 이상의 모니터링
- **결과**
 - 가족들 모두 현재 진행상황 및 기관의 대처에 만족감을 보이고 학대피해노인의 안정이 유지되고 있음.

골든타임

사례 요약

1. 개요

피해노인	황OO(여, 73)	학대행위자	고OO(여, 55)	관계	시설장
개입기간	2020년 1월 ~ 2020년 2월(총 1개월)				
학대유형	<input type="checkbox"/> 신체 <input type="checkbox"/> 정서 <input type="checkbox"/> 성 <input type="checkbox"/> 경제 <input checked="" type="checkbox"/> 방임 <input type="checkbox"/> 자기방임 <input type="checkbox"/> 유기				

2. 요약

- 치매 노인에게 큰 덩어리의 떡을 자르지 않고 제공하여 기도가 막히는 사고 발생하였고 영양보호사가 제대로 관찰하지 않아 사망하게 되었다는 내용 신고 접수
- 입소노인들에게 떡을 제공시 자르지 않고 그냥 제공한 점, 물 또는 음료가 제공되지 않아 어르신들이 떡을 드시는 과정에서 기도에 걸릴 수 있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사전 조치가 미흡한 점, 어르신들이 떡을 드시는 모습을 관찰하는 영양보호사가 없었던 점, 2차례 피해노인의 증상을 발견할 수 있었으나 이 부분을 놓치면서 피해노인의 골든타임이 지나가 사망한 것으로 방임학대로 사례 판정

I. 접수

- **접수상황** : 요양원에서 식탐이 강한 치매 노인에게 큰 덩어리의 떡을 자르지 않고 제공하고 영양보호사들은 이를 제대로 관찰하지 않아 어르신이 떡을 삼키다 기도가 막히는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며 결국 피해노인이 사망을 하게 되었다는 내용으로 국민신문고에 민원이 접수되어 본 기관에 신고 접수됨.

II. 상담 및 방문

- **진행** 총 21회기
- **상담 및 학대내용**

지자체 주무관과 동행하여 시설조사 실시
[보호자]

 - 피해노인이 시설에서 간식으로 떡을 먹다 목에 걸려 응급조치를 하였지만 의식이 없다는 내용으로 요양원에서 연락을 받아 병원으로 이송하게 되었다고 함.

• 상담 및 학대내용

- 피해노인은 1월 15일에 입원, 19일까지 연명치료를 받았고 지속적인 치료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19일에 연명치료 중단, 20일에 사망함.
- 시설측에서는 사건과 관련하여 실수를 인정한다고 하나 당시 피해노인에게 제공 되었던 떡과 어르신들을 관찰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처벌을 하고 싶다고 함.
- 사고당시 종교활동 날이라서 정신이 없어 보였다고 하며 간호사는 휴무였는데 간호사라도 있었다면 응급대처가 조금 더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함.

[시설장]

- 사고 당일 간식이 과일이었으나 보호자가 기정떡을 사오셔서 어르신에게 제공함.
- 수요일마다 예배가 진행되는 날로 당시 예배가 끝나고 정신이 없는 상황이었음.
- 떡은 자르지 않고 입소노인들에게 제공 되었으며 음료나 물이 없었던 사유는 간식의 종류가 갑자기 변경되어 급하게 준비하는 과정에서 물이 늦게 나가게 됨.
- 피해노인의 이상증상을 발견한 후 바로 119에 신고를 하였으며 시설장이 직접 하임리히법과 심폐소생술을 실시, 119 구급대원이 도착하여 신갈 강남병원 이송
- 시설의 간호조무사는 수요일마다 휴무라고 하며 사고 당일에는 휴무로 근무하지 않았다고 함. 간호조무사가 휴무인 날은 시설장이 대신 업무를 진행함.

[입소노인 상담]

- 입소노인이 먹기에 떡이 크진 않았는지 묻자, 손으로 원을 표현함. (약 5cm) 이어 간식에 따라 먹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간식이 제공된다고 이야기함.
- 피해노인은 땅바닥에 있는 것도 주워 먹고, 다른 사람이 먹다가 흘린 밥풀도 주워 먹을 만큼 먹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다고 함.
- 피해노인이 떡을 급히 먹거나 하는 상황을 잘 보진 못했으나 피해노인이 ‘킵’이라는 것 같아서 선생님(종사자)들이 심폐소생술(CPR)과 손을 주물러 주었다고 함.
- 간식 크기가 크면 잘라서 제공되는지 확인하자 건강한 사람이면 덜 잘라주지만 다져서 제공되는 사람도 있다고 함.

• **상담 및
학대내용**

[요양보호사 팀장]

- 사고 당시 업무관련하여 대표와 면담을 하고 있었다고 함.
- 당일 100세 노인이 시설에 입소하여 보호자가 떡을 해왔는데 말랑말랑해서 드시기 좋을 것 같아 논의를 통해 예정이었던 간식을 대체하여 떡을 제공함.
- 현장에 있던 요양보호사 2명이 입사 후 8번째 근무를 했던 날이었고 10년 정도 경력이 있는 베테랑으로 당연히 떡을 잘라서 제공 될 것이라고 생각함.
- 떡 크기가 어느 정도였는지 확인하자 묻자, 약4cm 정도를 손으로 표현함.
- 평소 피해노인이 식탐이 심해 밥도 혼자 드리지 않으며, 왼손을 잘 사용하는데 오른손은 잘 사용하지 못하여 항상 식사 수발을 했던 어르신이라고 함.
- 먹는 것 자체는 혼자서도 잘 먹었으며 과일을 크게 잘라와도 잘드셨다고함.
- 공익요원이 불러서 사고를 인지하였고 대표님과 나와 보니 피해노인의 손과 입술이 새파랬다고 함. 합류했을 당시 시설장이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으며, 떡이 목에 걸렸을 때 발견을 못해서 골든타임이 지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듦.

[요양보호사]

- 피해노인을 발견한 것은 다른 어르신 케어를 하는 과정에서 옆에서 누가 피해노인을 봐달라고 요청을 하여 피해노인의 이상증상을 확인하게 되었다고 함.
- 해당 시설에 출근한지 2~4일 밖에 안되 개개인의 특성을 잘 알지 못하였음.
- 간식준비는 지시를 받고 어르신들에게 제공함.
- 어르신들에게 음료(물) 제공은 별도로 준비는 하고 있었으나 예배가 끝난 시점으로 정신이 없어 제공하는 것은 감박하고 제공되지 않았다고 함.
- 피해노인을 발견 후 시설장에게 바로 보고하였으며 119에 신고를 하였다고 함.

[CCTV 자료확인]

- 사고 당일 CCTV를 확보하여 피해노인과 주변 상황을 전부 확인함.

• **전문가
자문**

[변호사]

- 4~5cm 크기의 떡을 제공하면서 음료 등을 제공하지 아니한점, 노인들의 치아상태 및 저작운동, 연하 등에 있어 능력이 낮은 노인들을 고려하여 음식이 제공하여야 함에도 상당히 큰 크기의 떡이 제공 되었고, 그에 저작·연하를 도울 수 있는 음료도 제공하지 아니한 바, 위험에 노출된 환경에 방치하였다고 볼 여지가 상당함. 또한 충분한 안전조치 없이 위험한 음식을 제공하고 응급조치 역시 미흡한 것으로 사료됨.
- 피해노인이 식탐이 강하여 음식도 많이, 빠르게 섭취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점, 피해노인의 상태에 맞지 않게 떡을 자르지 않고 제공, 음료나 물도 제공하지 않은 점, 섭취 과정을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는 점에서 방임학대로 판단됨.

• 전문가
자문

[경찰]

- 어르신에게 음식물(떡)을 드릴 경우 섭취하게 용이하도록 잘라서 음료와 함께 제공되어야 하며 종사자의 관찰하에 섭취해야 하는데 위와 같이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음식을 섭취하게 함으로써 질식사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

[의사]

- 어르신들에게 떡을 드리는 것은 기도폐색의 위험이 있어서 금지하고 있는 줄 알고 있으며 종사자의 방심으로 벌어진 사건으로 사료되며 방임학대로 판단됨.
- 떡뿐 아니라 음식물에 의한 기도폐색이 의심될 때 하임리히법을 즉시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함.
- 사고의 위험이 높은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바 방임학대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됨.(통상 떡 등의 음식물이 질식사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사회복지과 교수]

- 평소 음식을 급하게 드시는 어르신의 특성을 알고 있었음에도 떡을 자르지 않고 물도 제공하지 않았음. 질식이 진행되고 있었으나 종사자들은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해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여 사망까지 이르게 함. 이에 방임학대로 판단됨.

III. 대상자 분석 및 서비스 개입

• 개입 및 서비스연계

목표	연계기관	진행된 서비스내용
시설조사를 통하여 재학대 방지를 위한 행정조치	지자체	-
전문가 자문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사례판정을 하고자 함.	사례판정 자문위원	사례 자문

IV. 종결

- 사 유 서비스제한 - 기타 (지자체 사례판정서 발송)

V. 평가

- 해당 시설에서는 입소노인들에게 떡을 제공시 자르지 않고 그냥 제공한 점과 물 또는 음료가 제공되지 않아 어르신들이 떡을 드시는 과정에서 기도에 걸릴 수 있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사전 조치가 미흡하였다고 보임.
- 영양보호사가 어르신들이 떡을 드시는 모습을 관찰하는 종사가 없었으며 2차례 피해노인의 증상을 좀더 빨리 발견할 수 있었으나 이 부분을 놓쳐 골든타임이 지나가 피해노인이 사망한 것으로 사료 되었음.

VI. 사후관리

- **계획**
 - 사례판정서 지자체 발송 이후 행정조치 결과 확인
- **결과**
 - 지자체에서는 해당 시설 경찰 수사 요청

2020

경기도 내 노인보호전문기관 사업운영보고서 및 상담사례집

발행일 2020년 5월

발행인 경기도사회서비스원

편집인 경기도노인보호전문기관 기획연구팀

발행처 경기도노인보호전문기관, 경기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경기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경기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